





| SRI-기본-2019-06 |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국 및 수원시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Raising Minimum Wage Rate on Employment and Local Economy: the case  
of Korea and Suwon city

양은순

연구진

연구책임자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한수민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2019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최병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9년 10월 31일

**발행** 2019년 10월 31일

**ISBN** 979-11-90343-15-2 (93320)

---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양은순. 2019.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국 및 수원시를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

비매품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SVAR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전국 및 수원시 고용,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중·장기 파급영향, 충격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최저임금 추이, GDP 및 수원시 GRDP, 전국 및 수원시 실업률, 고용(수원시 종사자 수), 최종소비, 가처분 소득 등의 변수가 포함된 SVAR 분석을 수행
- 연구결과 충격반응과 분산분해 분석에서 전국과 수원시의 영향이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
  
- 먼저 전국의 경우 충격반응 분석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높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최종소비를 늘리고 가계의 실질소득인 가처분소득, 국가 GDP를 늘리는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됨
- 수원시 데이터의 경우 수원시 실업률이 단기에는 증가하나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었고, 지역생산(GRDP)을 전주기적으로 떨어트리고 종사자 수를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분산분해분석 결과 전국 데이터의 경우 각 거시변수에 미치는 최저임금의 영향은 다른 변수들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됨
- 반면 실업률의 영향이 국내 거시변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실업률이 올라갈 경우 최종소비, 가처분소득, GDP 등이 하락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국내 고용 및 경제정책의 경우 실업률 하락에 정책적 방향성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한편 국내 실업률은 GDP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은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일자리 정책만이 아닌 근본적으로 국가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따라서 생산성 증대를 위해 노동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금리인하 등 다양한 통화 및 재정정책을 노동정책, 기업 정책과 동시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각각의 정책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책을 시행
  
- 최저임금의 변화는 외부의 정책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최저임금 자체의 변동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이는 최저임금 정책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나타내 주는 결과임
-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정책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로 되어있음
- 이러한 구조는 빠른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나 여러 가지 사안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는 취약성 또한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일본 등과 같이 각 지역이 결정하고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 및 중앙의 사회적 자문기구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치는 방안, 혹은 현재와 동일한 체제에 중앙자문기구를 포함하는 영국과 같은 방안, 의회 승인 절차 추가 등 최저임금 변화의 영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기업 규모별, 지역별로 연도별 적용기간을 특례로 부여하는 등 특례조항 신설 등을 통해 최저임금 변화에 민감한 지역 및 산업이 갑작스러운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완충장치를 제공
  - 최저임금 감액적용, 산업특성·기업규모별 최저임금 밴드 설정, 유예기간 부여 등 상황별 차등 적용 방안 마련
  - 지역별, 산업분류별 임금근로자 현황 파악, 지역별 사업체 수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지역실태, 산업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세분화된 최저임금 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사업체 규모별, 의료보험 수령여부 등에 따라 목표임금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절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일부지역에만 별도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역간 격차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수원시의 경우는 전국과 달리 수원시 실업률과 종사자 수 변화에 최저임금 변화(인상)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전국대비 수원시가 최저임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임을 의미

- 수원시 지역 GRDP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종사자 수로 확인되는데, 종사자 수 역시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어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 실업률을 비롯, 종사자 수, GRDP 변화에 최저임금 인상(변화)이 주요한 충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수원시의 경우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및 지역 특색이 전국대비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보완할 수 있는 중앙단위의 최저임금 정책이 필요함
  - 지역별·산업별 차등화 적용, 규모별 밴드설정, 지역자문기구 창설 등
- 수원시 차원에서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나치게 편중된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수원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지역 산업의 종류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전국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산업을 보호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원시 지역 임금결정위원회 창설, 지역 자문단 신설 등을 시 자체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지역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병행될 때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지역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주제어: 최저임금, SVAR분석, 경제정책, 노동시장 정책, 지역경제



---

## 차 례

---

<b>제1장 서론</b> .....	<b>1</b>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내용적 범위 .....	4
3. 연구 방법 .....	5
<b>제2장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쟁점</b> .....	<b>7</b>
제1절 최저임금 인상의 국내 쟁점 .....	9
1. 최저임금의 고용 및 실업률 효과 .....	9
2. 소득분배에 대한 영향 .....	11
3. 물가에 대한 영향 .....	14
4. 자영업자에 대한 영향 .....	17
5. 근로장려세제(EITC)와의 관계 .....	19
제2절 해외사례 .....	22
1. 영국 .....	22
2. 독일 .....	24
3. 미국 .....	27
4. 일본 .....	31
5. 호주 .....	34
제3절 이론적 배경 .....	39
<b>제3장 최저임금 및 고용시장 현황</b> .....	<b>43</b>
제1절 최저임금 현황 .....	45
1. 최저임금 변화 추이 .....	45
2. 최저임금 영향률 .....	46
제2절 전국 및 수원시 고용시장 현황 .....	49
1. 실업률 .....	49
2. 고용률 .....	49

3. 경제활동참가율 .....	50
4. 수원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51
5. 수원시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	52
6. 수원시 업종별 종사자 .....	53
<b>제4장 실증분석 데이터 및 모형 .....</b>	<b>55</b>
제1절 실증분석 데이터 .....	57
1. 전국 데이터 .....	57
2. 수원시 데이터 .....	60
제2절 실증분석 모형 .....	63
1. 구조적 VAR(SVAR) 모형 .....	63
2. 공적분(cointegration) 검정 .....	65
3. 변수 순서(ordering) 및 장기제약 .....	67
4. 최적시차선택(lag selection) .....	69
<b>제5장 실증분석 결과 .....</b>	<b>71</b>
제1절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73
1. 상관계수 분석 .....	73
2. 충격반응분석 .....	74
3. 분산분해분석 .....	76
제2절 수원시 고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81
1. 상관계수 분석 .....	81
2. 충격반응분석 .....	82
3. 분산분해분석 .....	85
<b>제6장 결론 및 시사점 .....</b>	<b>89</b>
<b>참고문헌 .....</b>	<b>95</b>

---

## 표 차례

---

〈표 2-1〉 시간당 임금과 임금 증가율 .....	11
〈표 2-2〉 임금분위별 시간당 임금 증가율(%) .....	12
〈표 2-3〉 저소득노동자 비중과 중위임금 추이 .....	13
〈표 2-4〉 근로장려금(EITC) .....	20
〈표 2-5〉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쟁점 .....	21
〈표 2-6〉 2018년 영국 국가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금액 .....	24
〈표 2-7〉 제도 시행 전·후 독일 산업별 임금격차 변화 .....	26
〈표 2-8〉 미국 연방최저임금 대상자 비율 추이 .....	28
〈표 2-9〉 2018년 일본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기준액 .....	32
〈표 2-10〉 연도별 호주 최저임금 및 최저주급 .....	35
〈표 2-11〉 2019년 기준 호주 연령별 최저임금 현황 .....	35
〈표 2-12〉 호주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률 .....	36
〈표 2-13〉 2019년 기준 호주 숙련도별 최저임금 현황 .....	37
〈표 2-14〉 2019년 기준 호주 견습생 경력별 최저임금 현황 .....	37
〈표 2-15〉 2019년 기준 남호주의 연령별 최저임금 현황 .....	38
〈표 2-16〉 2019년 기준 호주 견습생 경력별 최저임금 현황 .....	38
〈표 3-1〉 최저임금 영향률 변화 .....	46
〈표 3-2〉 사업체규모별·산업분류별·임금분위별·고용형태별 최저임금 인상 영향률 변화(추정치) .....	48
〈표 3-3〉 전국 및 수원시 고용시장 현황 .....	50
〈표 3-4〉 수원시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 현황 .....	51
〈표 3-5〉 수원시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2017년) .....	52
〈표 3-6〉 수원시 업종별 종사자 수 분포 .....	53
〈표 4-1〉 전국 데이터 단위근 검정 결과 .....	57
〈표 4-2〉 전국 데이터 기초 통계량 .....	58
〈표 4-3〉 수원시 데이터 단위근 검정 결과 .....	60

〈표 4-4〉 수원시 데이터 기초 통계량 .....	61
〈표 4-5〉 전국 데이터 공적분 검정결과 .....	66
〈표 4-6〉 수원시 데이터 공적분 검정결과 .....	67
〈표 4-7〉 전국 및 수원시 데이터 최적시차 선택 .....	69
〈표 5-1〉 전국 데이터 SVAR 상관계수 분석 .....	74
〈표 5-2〉 수원시 SVAR 상관계수 분석 .....	82
〈표 6-1〉 전국 및 수원시 충격반응결과 요약표 .....	91
〈표 6-2〉 전국 및 수원시 분산분해결과 요약표 .....	9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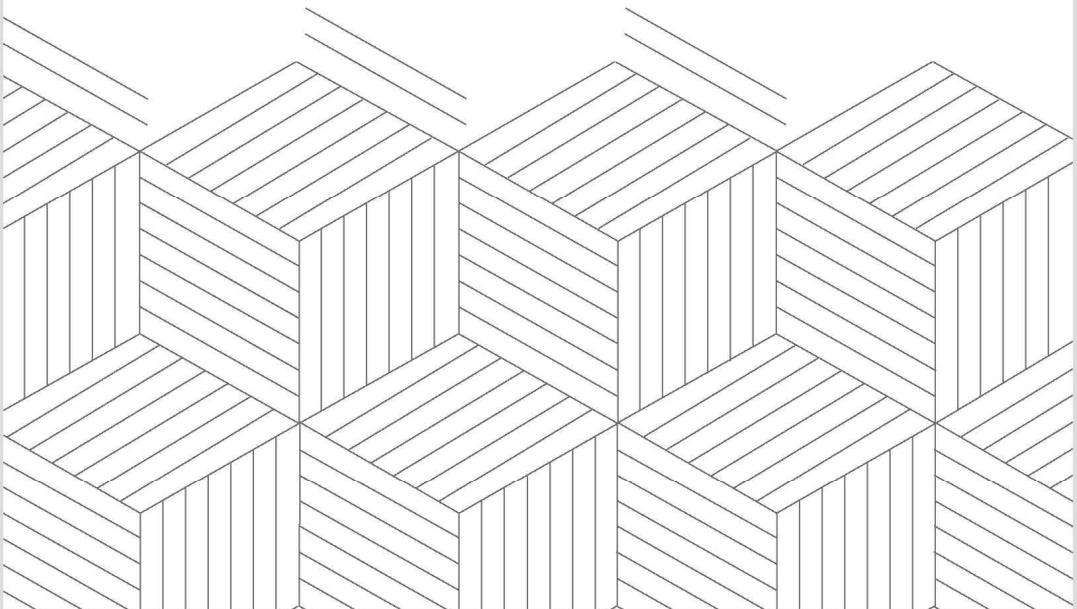
## 그림 차례

---

〈그림 2-1〉 2018년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률 및 취업자 증감 .....	11
〈그림 2-2〉 2018년 4분기 분위별 소득증감률 .....	14
〈그림 2-3〉 농·축·수산물 가격지수와 CPI 추이 .....	15
〈그림 2-4〉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상승의 관계 .....	16
〈그림 2-5〉 분기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 .....	19
〈그림 2-6〉 분기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 .....	19
〈그림 2-7〉 연도별 영국 최저임금 추이 .....	22
〈그림 2-8〉 2018년 기준 미국 주최저임금액 .....	30
〈그림 2-9〉 완전경쟁적 노동시장과 최저임금 .....	40
〈그림 2-10〉 수요독점적 노동시장과 최저임금 .....	41
〈그림 3-1〉 시간급 최저임금 및 전년대비 인상률 추이 .....	45
〈그림 3-2〉 최저임금 영향률 및 전년대비 인상률 .....	46
〈그림 3-3〉 전국 및 수원시 고용시장 현황 .....	51
〈그림 3-4〉 수원시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를 .....	52
〈그림 3-5〉 수원시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중 .....	54
〈그림 4-1〉 전국 레벨 및 차분 데이터의 시계열 특성 .....	59
〈그림 4-2〉 수원시 레벨 및 차분 데이터 시계열 특성 .....	62
〈그림 5-1〉 전국데이터 누적 충격반응함수 .....	76
〈그림 5-2〉 전국데이터 분산분해 분석 .....	80
〈그림 5-3〉 수원시데이터 누적 충격반응 함수 .....	84
〈그림 5-4〉 수원시 데이터 분산분해 분석 .....	87



# 제1장 서론





#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018년 높은 폭의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실업률 상승 등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에 관한 관심이 고조됨
  -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으로 2018.07.01.일부터 전년대비 16.4% 증가한 7,530원으로 인상됨
  - 이는 2001년 이후 평균 인상분인 11.8% 대비 최고 상승률을 보이는 것으로 가파른 인상률 자체에 대한 비판을 비롯해 인상효과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팽배함
- 특히 인상계획 발표 이후 2018년 상반기(1월~6월)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대비 218,000명 하락(360,000명→142,000명)하고 실업률이 전년 동기대비 0.1%p 증가한 4.1%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에 충격을 가져옴
  - 이중 경제활동인구(15세~64세)는 6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8만명 감소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상반기 73,000명 감소하였는데, 도소매업에서 60,000명, 운수업에서 16,000명이 감소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53,000명 감소
  - 서비스업 역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제조업분야 상반기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3,000명 감소함
-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단순한 통계결과를 떠나 지역별, 산업별, 연령별 효과를 세분화해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인상 직후의 단기적 영향뿐 아니라 소득변화에 따른 소비, 생산변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중·장기 동태적 영향이 고려되어야 함
- 또한 고용의 질적 변화와 소득 분배의 효과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단기적인 고용 변화만으로 전반적인 경제 효과를 논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 및 현안 분석, 이론적 논의,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최저임금인상이 수월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고찰하고자 함

- 또한 중·장기 파급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최저임금 추이, GDP 및 수원시 GRDP, 전국 및 수원시 실업률, 고용(수원시 종사자 수), 최종소비, 가처분 소득 등의 변수가 포함된 SVAR(Structural Vector Auto Regression) 추정을 수행함
  - SVAR 추정은 세부적인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검증해 보아야 하는 단계적 어려움이 있으나 과거와 현재 데이터의 영향을 반영해 특정 변수의 파급 영향 및 요인 분석 활용에 적합한 분석 모형임
-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전국 및 수원시 고용시장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확인을 목적으로 함
- 또한 분산분해 분석을 통해 각 변수의 변동성에 어떠한 변수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최저임금인상이 각각의 변수 변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확인하고자 함
  - 최저임금이 각 변수에 미치는 영향 및 각 거시변수별 주요 충격요인 분석을 수행
- 최종적으로는 실증분석 결과의 시사점을 통해 전국 및 수원시 경제, 일자리 정책 방향성 제시를 목표로 함
  - 예를 들어 수원지역 임금결정위원회 창설 등을 통해 지역의 소득 수준과 산업 특성에 적합한 최저임금 수준을 산출토록하고 지역소득, 산업별 최저임금 차별화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함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앙단위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을 결정에 있어 무책임했다는 비판이 있으며 지역별, 산업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결정이 이루어짐
  - 일본, 미국, 유럽에서도 지역별, 산업별 소득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는 등 차등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 있음

## 2. 내용적 범위

- 최저임금인상의 주요 쟁점 정리
  - 장·단점, 찬반 논쟁 등
- 해외사례 분석, 이론적 배경 분석
- 최저임금현황 분석, 최저임금 영향률 분석
  - 통합, 사업체 규모별, 산업분류별, 임금분위별, 고용형태별 영향률 분석
- 전국, 경기도, 수원시 고용시장 현황 분석
- 최저임금 인상이 전국 고용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SVAR을 통한 실증분석)
- 최저임금 인상이 수원시 고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SVAR을 통한 실증분석)

### 3. 연구 방법

- 해외사례, 선행연구 분석
- 최저임금 현황 분석
  -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 영향률 분석
- 전국 및 수원시 고용시장 현황 분석
- SVAR(Structural Vector Auto Regression) 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전국, 수원시 대상
  - 상관계수분석, 충격반응분석, 분산분해분석 수행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 단계	연구방법	연구내용
1단계	주요 쟁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쟁점분석</li> <li>■ 해외사례분석</li> <li>■ 이론적 배경</li> </ul>
↓	↓	↓
2단계	최저임금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현황</li> <li>■ 최저임금 영향률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 사업체규모별, 산업분류별, 임금분위별, 고용형태별 영향률 분석</li> </ul> </li> </ul>
↓	↓	↓
3단계	전국 및 수원시 고용시장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및 경기도 고용시장 현황 분석</li> <li>■ 수원시 고용시장 현황 분석</li> </ul>
↓	↓	↓
4단계	SVAR 실증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데이터 실증분석</li> <li>■ 수원시데이터 실증분석</li> <li>■ 상관계수분석, 충격반응분석, 분산분해분석 수행</li> </ul>
↓	↓	↓
5단계	실증분석을 통한 정책시사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의 영향보다 실업률의 영향이 각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큼: 실업률 하락에 정책적 방향성을 집중</li> <li>• 생산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행 필요</li> <li>• 최저임금결정절차 다각화,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 마련</li> </ul> </li> <li>■ 수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li> <li>• 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의 다변화 노력 필요</li> <li>• 지역 노동생산성 및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li> <li>• 지역 임금결정위원회 창설 건의 등</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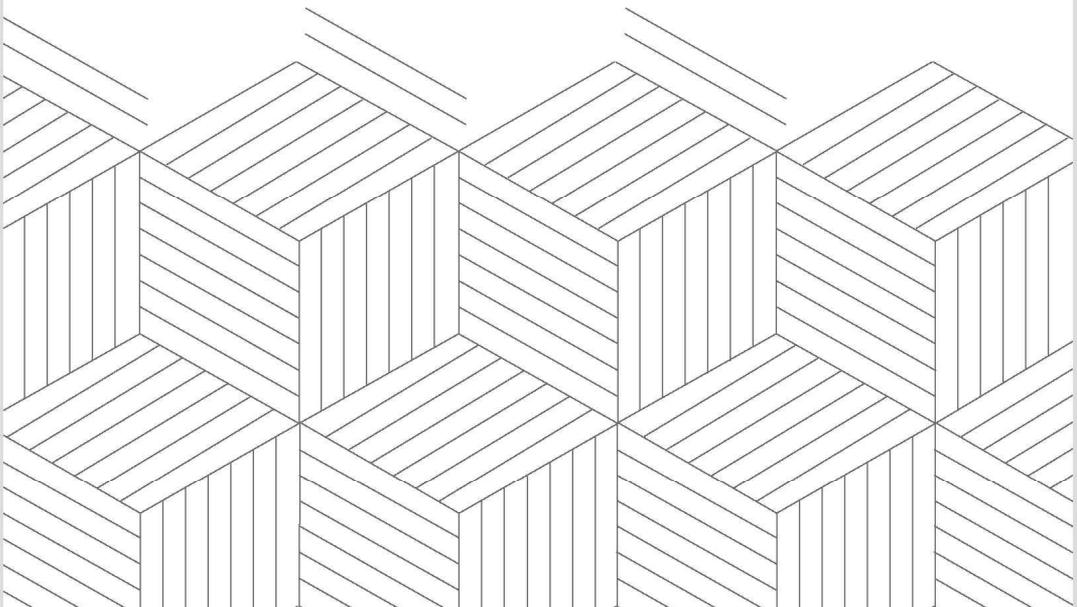
# 제2장

##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쟁점

제1절 최저임금 인상의 국내 쟁점

제2절 해외사례

제3절 이론적 배경





## 제2장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쟁점

### 제1절 최저임금 인상의 국내 쟁점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명목 하에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의 인상이 이루어짐
-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 및 경제효과에 대해 학계에서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는 등 고용 및 노동시장의 주요 쟁점이 되어 옴
- 따라서 본 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주요 쟁점을 1) 고용 및 실업률, 2) 소득분배, 3) 물가, 4) 자영업자에 대한 영향, 5) 근로장려금(EITC)으로 총 다섯 개의 경제효과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 1. 최저임금의 고용 및 실업률 효과

##### 1) 찬성의견 국내 연구 (긍정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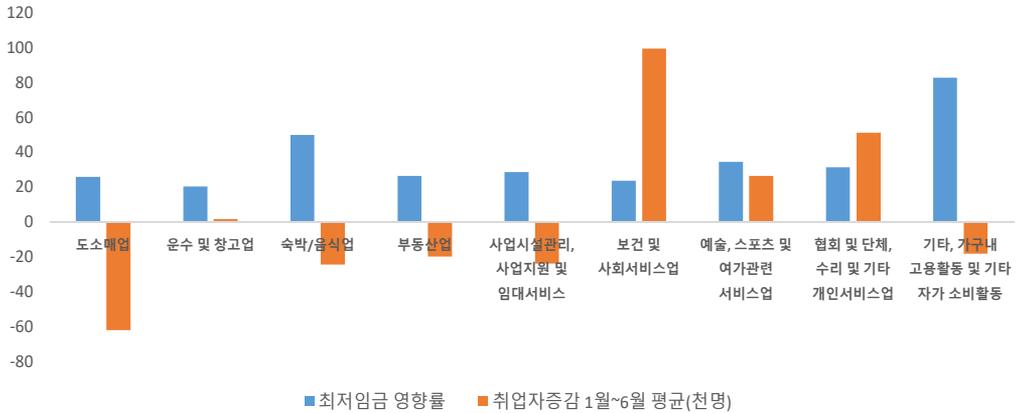
- 최저임금을 통해 저소득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어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함
- 김유선(2018)은 수요독점모델과 효율임금가설을 통해 최저임금 대상자(영향률)와 임금 인상액을 추정한 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함
  - 2018년 기준 최저임금 대상자들의 연간 임금인상 총액은 최대 7조 2천억원(월 6천억원)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규모임
  - 이외에 2017년 기준 전체 자영업자 568만명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1만명으로 28% 정도의 자영업자들만이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함
  - 이들의 인건비 부담은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카드 수수료 인하, 건물 임대료 규제 등 다양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김유선, 2018)

- 이병희(2009)와 노동부(2009) 역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견하였고, 남성일(2009)는 오히려 임금인상 효과를 확인함
- 이시균(2007)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사업체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노동자와 저소득노동자를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수준은 고용률과 고용수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보임

## 2) 반대의견 국내 연구 (부정적 효과)

- 반면 윤상호(2018)은 시계열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화가 용이한 업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단순근로자의 고용 비중과 근로시간 비중이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함
  - 최저임금이 1,000원 인상될 경우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상위 33%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고용 비중은 각각 0.78%p, 0.83%p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남
  - 여성 노동자의 고용 비중과 근로시간 비중은 각각 9.49%p, 9.64%p 하락함으로써 고용시장의 열위에 있는 여성 고용이 더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함
  - 연령별로는 고용 비중, 근로시간 비중 모두 26~39세와 4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2018년 통계청 고용동향에 의하면, 최저임금 영향률이 50%에 달하는 음식숙박업의 월평균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만4천명 감소하였으며, 26%에 달하는 도소매업은 월평균 61만8천명이 감소함
- 따라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고용능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일자리가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서 쫓아내고 있다고 해석함
  -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달리 50~60대 중년층과 여성 주부 등 주로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
- 유사하게 김강식(2017)은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은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기득권층의 더 나은 처우를 위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근로자들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함

〈그림 2-1〉 2018년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률 및 취업자 증감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각호, 최저임금위원회(2018),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재인용

## 2. 소득분배에 대한 영향

### 1) 찬성 의견 국내 연구 (긍정적 효과)

-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연구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면 소득불평등이 완화된다고 강조하고 있음
- 실제로 201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2018년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은 1만 9500원으로, 지난해 1만 7400원에 비해 약 11% 가량 상승함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표 2-1>과 같이 2018년 시간당 임금 증가율은 2017년 4% 대비 2배 이상 상승하였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2018년 이루어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함

〈표 2-1〉 시간당 임금과 임금 증가율

(단위: 천원, %)

년도	시간당임금(천원) <sup>1)</sup>	임금증가율(지자체대비)
2015	16.0	-4.3
2016	16.7	4.6
2017	17.4	4.0
2018	19.5	10.7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년 원자료 이용

1) 시간당 임금=월평균임금/평균월근로시간

- 2018년 시간당 임금 변화율을 10개의 임금분위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임
  - 주로 최저임금 대상이 밀집되어 있는 1분위, 2분위 저소득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증가율은 각각 19.8%, 19.2%로, 전체임금 평균 증가율인 12.3% 대비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3~7분위에 속한 중·상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증가율 역시 전체 임금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남
  - 임금의 위계적 구조로 인해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상승은 중상위 근로자의 임금까지 연쇄적으로 증가시키는 영향을 보임

〈표 2-2〉 임금분위별 시간당 임금 증가율(%)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5	-4.3	1.6	-0.2	-0.6	-0.9	-1.7	-2.0	-2.0	-2.7	-4.1	-1.9
2016	4.6	7.2	5.9	4.3	4.1	4.0	3.2	2.8	2.9	3.0	0.4
2017	4.0	7.9	7.1	6.2	5.8	6.5	6.8	7.6	8.1	8.6	9.0
2018	12.3	19.8	18.2	16.2	14.3	13.3	13.1	12.9	12.3	11.0	8.8

자료: 김준영(2019) 재인용

- 그 외에 ‘중위임금 2/3미만 분위’에 속한 근로자들을 저소득 근로자로 정의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2018년 저소득 근로자 비중은 2017년 22.3%에서 19%로 감소되는 모습을 보임
  - 이는 기존에 ‘중위임금 2/3미만 분위’에 속해 있던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위임금 2/3이상’ 구간으로 대거 이동되었기 때문으로 소득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sup>2)</sup>로 추정된 2018년 임금 불평등 역시 0.33%로 동년 0.35%에 비해 0.018% 감소되어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함
- ‘고소득임금 20%/저소득임금 20% 집단의 평균임금’ 공식을 통해 추정된 2018년 5분위 분배율은 4.67로 작년의 5.06에 비해 0.39정도 감소된 것을 보임
- 이와 같은 임금분배 구조의 개선은 최저임금의 순기능으로 같은 해 이루어진 급격한 인상폭(16.4%)으로 유발된 긍정적 결과임(김준영, 2019<sup>3)</sup>)

2)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3) <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61278&pageIndex=1#contributePolicy>

〈표 2-3〉 저소득노동자 비중과 중위임금 추이

년도	저소득 노동자 비중	지니계수	5분위 분배율
2015	23.5 (-0.2)	0.369 (-0.002)	5.41 (-0.06)
2016	23.5 (0.00)	0.355 (-0.007)	5.24 (-0.17)
2017	22.3 (-1.2)	0.351 (-0.003)	5.06 (-0.18)
2018	19.0 (-3.3)	0.333 (-0.009)	4.67 (-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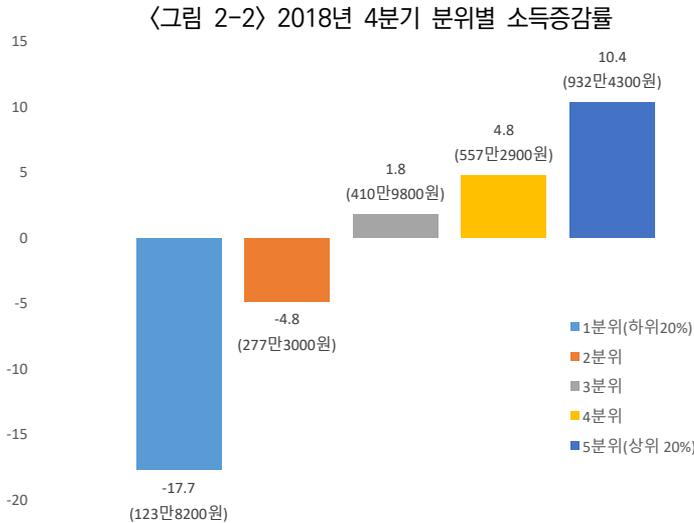
자료: 김준영(2019) 재인용

## 2) 반대의견 국내 연구 (부정적 효과)

- 이와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감소시켜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는 반박주장 역시 제기됨
- 정은주·방준호(2019)에 따르면 주로 고령·여성·저학력자 등 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43만 500원, 사업소득 20만 7,3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6.8%, 8.6%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경기악화로 인해 2017년 4분기에 임시·일용직 15만 1천명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8만 7천명 감소하여, 1분위 가구당 취업자 수는 0.64명으로 전년 동기 0.81명 대비 21% 가량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됨(정은주·방준호, 2019)<sup>4)</sup>
  - 실제로 소득 1분위 가구 중 무직상태인 근로자의 비중은 55.7%로 지난해 43.6% 대비 12.1% 증가함
- 2018년 4분기 통계자료 역시 소득하위 20%(1분위)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23만 8,200원, 그리고 소득하위 20~40%(2분위)가구는 277만 3,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17.7%, 4.8% 하락하는 추이를 보임
  - 특히 2018년 1분위 가구소득은 각각 1분기에 5%, 2분기 7.6%, 3분기 7% 하락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4분기 기준 17.7%로 통계집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함
  - 반면 중간계층인 소득하위 40~60%(3분위)와 소득상위 20~40%(4분위)가구는 각각 1.8%, 4.8% 증가하였고 소득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932만 4300원으로 10.4%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4분기 기준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지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3134.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3134.html)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격차 역시 5.47배로 2008년 2분기 5.24배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나 소득격차가 악화되고 있음이 확인됨



자료: 정은주·방준호(2019) 재정리

- 그 외에 조경엽(2018)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취업포기 상태에 있던 중·상위 소득 가구의 2차 근로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영향이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대폭 상승한 최저임금액 수준에서 취업할 의사가 없었던 중위임금 근로자가 고용시장에 진입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쫓아내는 소득 재분배를 역행하는 결과 초래
  - 고용주 입장에서도 저임금 근로자보다 생산성이 높은 중위임금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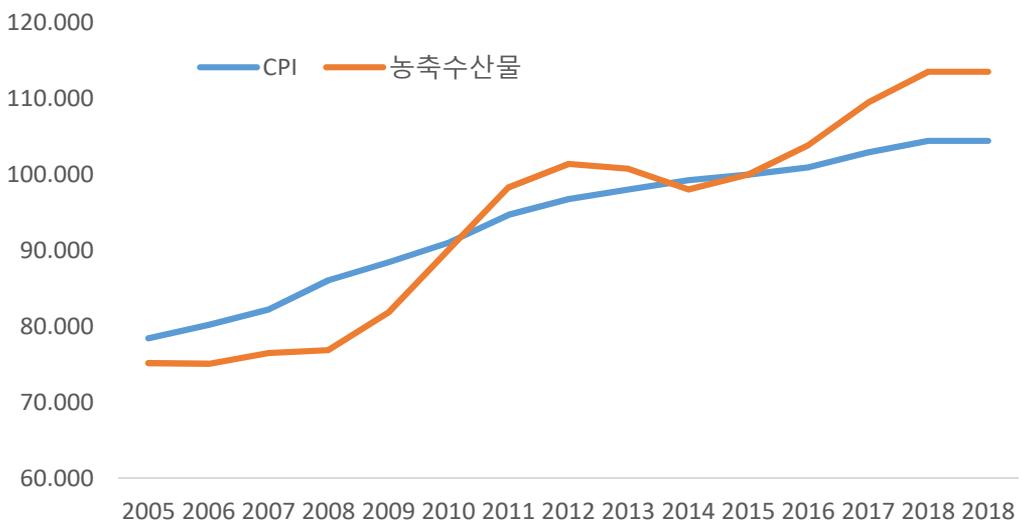
### 3. 물가에 대한 영향

#### 1) 찬성 의견 국내 연구 (긍정적 효과)

- 일부 연구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거나 아예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강승복(201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물가는 약 0.2~0.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물가에만 반영된다고 전제한 결과이고 기업은 임금이 오르면 다양한 방법으로 임금인상에 대응하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이보다 작을 것이라고 언급함

- 실제로 최저임금이 16.4% 대폭 상승한 2018년 8월 기준 물가 상승률은 1.4%로 전년 대비 0.5%p 줄어들었으며, 2019년 기준 0%대를 기록하고 있음
  - 이는 10년간 평균 상승률인 약 1.96%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 없이 오르고 떨어지기를 반복해왔다는 것을 나타냄
  -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로 2000년 이후 물가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현재 일부 언론에서 높은 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식물가가 인상되었다는 주장 역시 최저임금의 영향보다는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 <그림 2-3>과 같이, 농·축·수산물의 물가 인상률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18년 13.56%를 기록하였지만, 통합 CPI는 4.45%에 그침
  - 이는 음식업종의 주재료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외식물가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그 외에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시장의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음식가격을 10% 이상 높게 인상한 것이 물가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강승복, 2018)
    - 롯데리아, 버거킹, KFC 등 주요 3사 패스트푸드 가격 인상폭은 최대 12.7%로 나타남

〈그림 2-3〉 농·축·수산물 가격지수와 CP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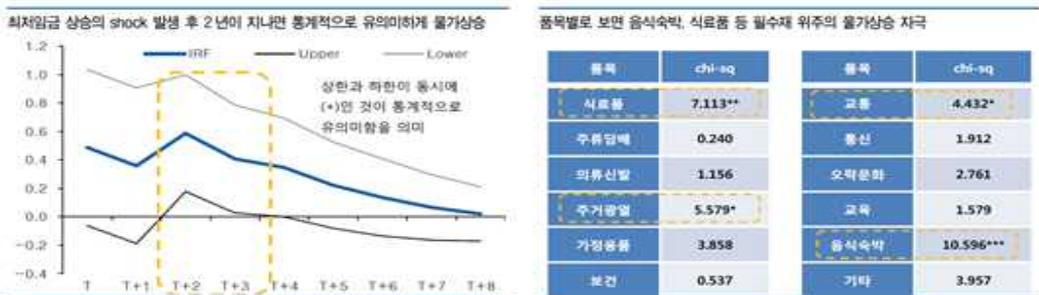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2) 반대의견 국내 연구 (부정적 효과)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물가 상승이 유발된다고 반박하는 연구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비용충격이 발생하면 기업의 비용부담이 생산재의 원가상승으로 전이되어 생산자 물가 및 소비자 물가가 인상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최저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VAR모형으로 실증분석한 정원일(2017)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은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원인변수로 작용되며, 장기적인 충격으로 약 2년 후의 물가까지 상승시킨다는 결과가 나타남
  - 품목별로 구분하여 물가 상승을 추정한 결과에서는 식료품과 주거광열, 음식숙박, 교통 등 필수재 업종 위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임
  - 이는 주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업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비용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시켜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므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시켜 실질구매력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그림 2-4〉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상승의 관계



자료: 정원일(2017) 전제

- 생산자물가와 실질GDP,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설명변수로 포함하고 있는 거시경제 모형의 소비자물가 방정식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생산자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단기적으로 0.27, 장기적으로 0.35로 다른 설명변수에 비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물가는 장기적으로 생산자물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됨
  - 다시 말해,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해 생산 제품의 원가상승을 유발시키고, 이는 더 나아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짐
  -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소득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물가 인상을 촉진시켜 가계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음

## 4. 자영업자에 대한 영향

### 1) 찬성의견 국내 연구 (긍정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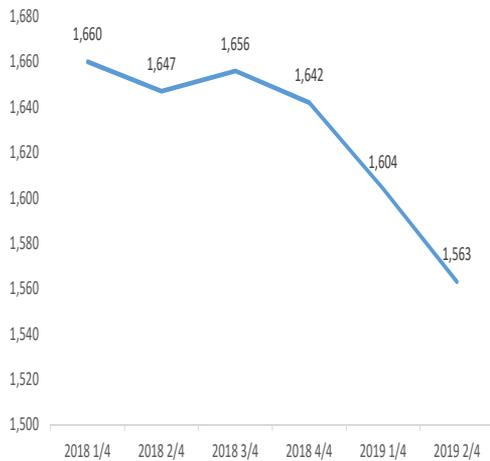
-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몰락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음
- 국세청에서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에 의하면 2018년 자영업 폐업자 수와 폐업률이 2017년 대비 모두 감소된 것으로 조사됨
  - 2018년 자영업 폐업자 수는 83만 884명으로 전년 대비 6,830명 감소하였으며, 폐업률 역시 전년보다 0.7%p가량 줄어든 11%를 기록함
- 도매업·소매업·음식업·숙박업 등 대표적인 4개의 자영업업종에서도 폐업자 수는 감소하고 신규업자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폐업자 수는 38만 2,359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3,000명가량 떨어졌지만 자영업 신규업자 수는 오히려 124만 2,756명으로 전년 대비 8만 2,95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2019년 5월 고용동향 자료에서도 전체 자영업자 568만 3천명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09만 9천명으로 언론보도와 다르게 72%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압박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인건비에 대한 압박을 받는 자영업자들은 28% 규모임
- 주현·김숙경·김종호(2013)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자영업자의 수익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높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시장점유율을 뺏겨 영업부진으로 인한 시장퇴출 위험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함
  - 그러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가 자영업자 수익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근로자의 소득 증대로 인해 오히려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면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음
- 이정식(2017) 역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다른 제도나 구조의 문제가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킨다고 언급하고 있음

## 2) 반대의견 국내 연구 (부정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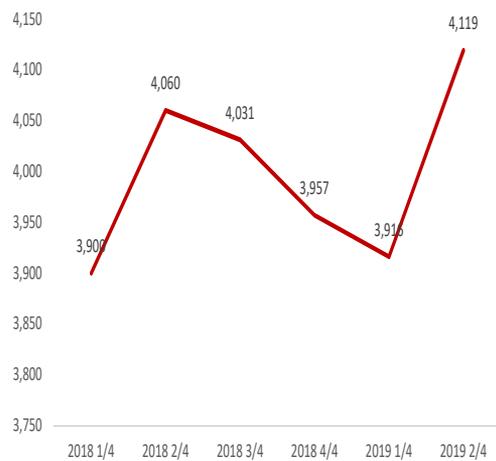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음
  - 참고로 국내 자영업은 전체 고용의 85%를 담당하고 있음
- 2019년 5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416명과 소상공인 703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답변이 27.1%로 가장 높았으며, ‘업종전환·폐업’ 25.4%, ‘1인 또는 가족경영’으로 전환한다는 응답이 21.5% 순으로 나타남<sup>5)</sup>
  - 이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인건비 압박으로 작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함
- 또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에서 가장 부담을 주는 지출 항목을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고용문제(인건비·4대 보험)’가 85.5%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으며, ‘상권문제(임대료·권리금 등)’ 24%, ‘수수료 문제(카드·광고비·배달비 등)’ 15.9% 순으로 조사됨
- 2019년 3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의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분기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2018년 3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9년 1분기 기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 4천명으로 동년 대비 7만명이 감소하고, 2분기에는 15만 63천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함
  - 이와 같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하락은 최저임금의 부작용(인건비 압박)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로 볼 수 있음
- 이와 반대로 2019년 4분기 기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대비 5만 9천명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석 역시 최저임금의 악영향으로 분석하는 견해가 있음
  - 성수영(2019)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것은 업주가 비용 부담으로 임시직원을 내보내고 1인 영세 자영업자로 전략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

5)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5/363005/>

〈그림 2-5〉 분기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



〈그림 2-6〉 분기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



자료: 통계청

## 5.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와의 관계

### 1) 찬성의견 국내 연구 (보완관계)

- 국내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조세제도를 통해 실질소득을 상승시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유발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9년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세제(EITC)를 시행하여 2013년부터 2017년 약 5년간 909만 가구에 총 6조 4,385억원을 지원함<sup>6)</sup>
  - 근로장려금은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소득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2019년 기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으로 확인됨
-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이 되어 소득분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으며,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공통적인 목적 하에 최저임금제도와 보완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장려세를 확대하여 현재 최저임금제와 적절히 결합시킬 경우 최저임금 인상폭을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변동시키면서 저소득 근로자 및 가계의 실질 소득을 확대시킬 수 있음(유영성, 2018)

6)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408>

## 2) 반대의견 국내 연구 (대체관계)

- 반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근로장려금 반납액이 커지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실질적인 소득은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 유인효과가 저하되어 두 제도간 대체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조경업(2018)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까지 대폭 상승하면 최저임금 영향율이 35%까지 확대되는데 근로자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어긋나고 고용 감소에 직면하며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2018 세법개정안'대로 EITC가 확대되면 모든 가구가 수혜대상이지만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될 경우, 단독가구는 15만원, 홑벌이 가구는 31만원, 맞벌이 가구는 45만원을 기존보다 덜 받게 되어 오히려 근로유인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제시하고 있음(조경업, 2018)
- 따라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증가시킬수록 최저임금과 EITC의 대체효과가 강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함

〈표 2-4〉 근로장려금(EITC)

최저임금		7,530원	8,350원	10,000원
급여	월급(연봉)	157만원 (1,889만원)	173만원 (2,077만원)	205만원 (2,456만원)
근로장려금 현행	단독	0	0	0
	홑벌이	47만원	5만원	0
	맞벌이	0	0	0
근로장려금 개정안	단독	15만원	0	0
	홑벌이	181만원	150만원	88만원
	맞벌이	121만원	76만원	0

자료: 조경업(2018)

〈표 2-5〉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쟁점

구분	찬성의견 (긍정적 측면)	반대의견 (부정적 측면)
고용 및 실업률에 대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량 변화에 관련성이 낮음</li> <li>· 최저임금이 10% 증가하면, 고용률은 0.4~0.9%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미약한 수준(강승복, 2015)</li> <li>· 고용변화에 영향 없음(이병희, 2009, 노동부 200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될수록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업종의 고용을 크게 하락시키는 추세를 보임: 2018년 최저임금 영향률이 50%에 달하는 음식숙박업의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2만 4천명 감소하고, 26%의 영향률에 달하는 도소매업은 월평균 61만 8천명 하락(조경엽, 2018)</li> <li>·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동화에 민감한 업종의 고용 비중과 근로시간 비중을 감소시키며, 이는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단순근로자의 실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윤상호, 2018)</li> </ul>
소득분배에 대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높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는 줄어들음</li> <li>· 2018년 시간당임금 변화를 10개의 임금분위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1분위와 2분위의 저소득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증가율은 각각 19.8%, 19.2%로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증가율인 12.3%에 비해 크게 증가(김준영, 2019)</li> <li>· 지니계수로 추정된 2018년 임금불평등도는 0.333으로 전년 동기대비 0.018 감소되어 소득불평등이 개선(김준영, 201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 계층의 소득을 오히려 하락시켜 소득 재분배가 악화됨</li> <li>· 2003~2016년간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상위 20%의 근로소득을 84% 증가시키지만,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42% 증가에 그쳐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li> <li>·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상위 소득 가구의 2차 근로자 이동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저소득 근로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소득 재분배가 악화됨</li> </ul>
자영업자에 대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영업자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건비 외에도 무수히 많아 명확한 상관관계를 알아내기 쉽지 않음</li> <li>· 최저임금을 통한 인건비의 상승 보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이 비교적 경쟁력이 약한 자영업자의 수익을 감소시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에 크게 부담을 느낌</li> <li>· 2017년 하반기 최저임금 대상자가 주로 종사하고 있는 8대 업종의 폐업률은 2.5%로 2.1%의 창업률을 넘어섰으며, 2018년 1분기의 매출액 또한 전년 동기대비 12.3% 정도 감소함</li> <li>· 최근 저소득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의 폐업신고 급증</li> </ul>
물가에 대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거나 관련 없음</li> <li>·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물가는 약 0.2~0.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물가에만 반영된다고 전제한 결과임(강승복, 2015)</li> <li>· 최저임금이 10%이상 올랐던 2007년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오히려 감소(송영훈, 201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이 증가하면 생산비용이 인상되어 재화의 가격(물가)을 상승시키는 부정적인 효과 존재</li> <li>· 최저임금의 충격은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원인변수로 작용되며, 장기적인 충격으로 약 2년 후의 물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보임(정원일, 2017)</li> </ul>
근로장려금(EITC)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공통적인 목적 하에 최저임금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는 보완관계 역할을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근로장려금 반납액이 커지거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면 근로 유인효과가 감소하여 두 제도간의 대체효과가 발생됨</li> <li>· '2018 세법개정안'대로 EITC의 수혜대상이 확대되어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15만원, 홑벌이 가구는 31만원, 맞벌이 가구는 45만원을 덜 받게 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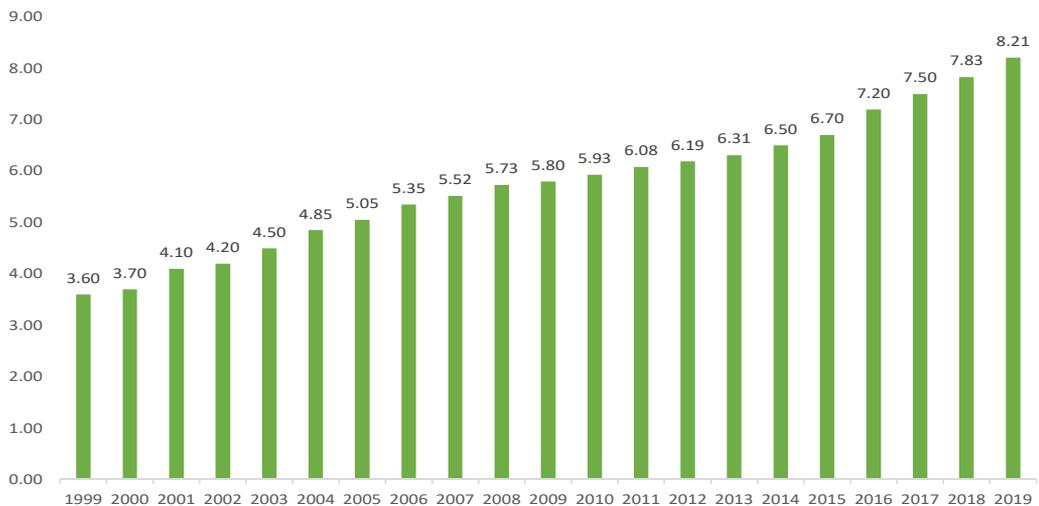
## 제2절 해외사례

-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사례의 경우 연령, 지역, 산업, 그리고 근로자의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는 특징이 나타남
- 따라서 본 절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 국가인 영국, 독일, 미국, 일본, 호주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1. 영국

- 매년 4월마다 최저임금을 갱신하고 있는 영국은 1998년 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음
  - 노·사·공익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ttee)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검토와 제도 운영방안 개선이라는 두 가지 주요 업무를 수행함
- 영국의 최저임금제는 도입 당시 1999년 3.60파운드였던 최저임금이 빠른 인상으로 2019년 4월 기준 128.1% 상승한 8.21파운드가 적용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속도에도 고용, 물가,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임금격차나 소득분배 등을 개선시켜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란 인식을 얻고 있음

〈그림 2-7〉 연도별 영국 최저임금 추이



자료: Low Pay Commission (2019)

-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는 주로 저소득업종 근로자들로 다음에 해당됨
  - 16세 이상 모든 근로자 중 임시근로자 및 비정규직
  - 농업 종사자
  - 장애인, 재택근무자, 단순 노동자
  - 임시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 영국 공해내 근무자
- 반면 최저임금 비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자영업자, 군인, 자원봉사자, 견습생 및 인턴 중에 있는 잠재근로자
- 영국 정부는 최저임금제를 통해 저소득 계층의 근로소득 증가, 청소년·비정규직 등 사회 약자를 보호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영국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음
  - 1999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시에는 22세 이상, 그리고 18~21세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의 최저임금률만 시행
  - 2004년부터 16~17세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최저임금액이 설정되어 총 세 가지의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됨
  - 2010년부터는 견습생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시작
  - 2016년 이후부터 25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서는 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가 적용됨에 따라 그 미만 연령의 근로자 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도입함
    - 2016년 이전: 22세 이상 최저임금, 2016년 이후: 25세 이상 국가생활임금
- 현재 영국의 연령별 최저임금은 25세 이상, 21~24세, 18~20세, 16~17세, 그리고 견습생에게 적용되는 총 5개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음
  - 2017년부터 2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4% 이상으로 2019년 기준 최저임금액은 8.21파운드(약 12,136원)까지 상승하였음
    - 21~24세는 7.70파운드, 18~20세는 6.15파운드, 18세 미만은 4.35파운드, 견습생은 3.90파운드로 인상됨
  - 지역, 직종, 산업의 종류, 사용자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표 2-6〉 2018년 영국 국가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금액

(단위: 파운드)

구분	2017년	2018년	'17~'18년도 인상률	2019년	'18~'19년도 인상률
국가생활임금	7.50	7.83	4.4%	8.21	4.9%
21~24세 최저임금	7.05	7.38	4.7%	7.70	4.3%
18~20세 최저임금	5.60	5.90	5.4%	6.15	4.2%
16~17세 최저임금	4.05	4.20	3.7%	4.35	3.6%
건설생 최저임금	3.50	3.70	5.7%	3.90	5.4%

자료: Low Pay Commission (2019)

- 국가생활임금 인상의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2018년 160만명에서 2019년 240만명으로 증가하고, 연령대별 최저임금 적용 대상도 최대 18.6%까지 확대됨
  - 전체 근로자(2,465만명) 중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25세 이상 성인근로자는 6.49%를 차지
- 영국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종전 대비 4.9% 인상한 국가생활임금은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주 30시간 근로자 기준 연간 600파운드의 소득 인상 효과를 발생시킴
- 이외에 2018년 고용과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동시에 실업률은 3.9%로 지난 4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최저임금 도입 목적과 부합되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 또한 영국 정부는 2016년 국가생활임금 도입 당시 계획했던 2020년 전체 중위소득 (Median Wage)을 60% 까지 인상할 목표를 가지고 있음
- 2020년 국가생활임금은 2019년보다 5.0% 인상된 8.62파운드로 규정하면서도 경제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것이라고 언급되고 있음

## 2. 독일

- 독일은 비교적 뒤늦게 ‘노동협약자율성강화법(Tarifautonomiestärkungsgesetz)’에 근거하여 매년 최저임금의 규모를 새롭게 산정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노·사 간 단체교섭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임금조건을 결정해 산업별 차등 최저임금을 적용해 왔음
    -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된 업종에 대해서는 2016년 연말까지 단체협약 내용의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토록 함(외교부, 2017)

- 그러나 임금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노동의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2015년 1월부터 시간당 8.5유로의 최저임금을 모든 직종에 일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음
  - 2015~2016년(8.50유로)→2017~2018년(8.85유로)→2020년(9.39유로)
- 다만 독일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례대상자로 분류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 재취업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실업자
  - 자영업자
  - 직업교육 미수료 18세 미만 청소년 및 견습생
  - 학교 또는 직업훈련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행되는 견습생(직업교육생)
  - 6주 미만으로 실행되는 자발적인 인턴(실습생)
  - 명예직 및 자원봉사자
- 현재까지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 도입을 통해 미니잡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정규직(파트타임 정규직 포함)으로 전환되고 임금격차가 완화된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되고 있음
  - 급여가 월 450유로(약 54만원)이하를 칭하는 미니잡은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납부 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며, 제도 시행 전 400만개에 달하였음
  -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2015년 초 미니잡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전년도대비 300만명이 감소하였고 이 가운데 절반은 사회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최저임금제의 영향률이 큰 소매업, 외식업에서 미니잡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이외에 EU 통계청에 의하면 독일의 실업률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2015년 1월 4.8%에서 2016년 3월 기준 4.2%으로 약 0.6% 하락되는 추세가 나타남
- 또한 2017년 2분기 독일 취업자 수는 4,420만명으로 최고 기록을 갱신하였고 전기 대비 1.5%,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는 등 최근 5년래 최대 증가율을 보임(외교부, 2017)
- 임금격차와 관련해 독일연방통계청은 제도 시행 전 2014년 12월과 시행 후 2017년 6월 업종별 단체협약상의 최고임금업종과 최저임금업종(8.5유로 미만)의 임금격차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임금격차가 5.7%정도 감소하고 업종 전체의 격차 역시 0.2%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함
  - 숙박업·요식업에서 임금격차가 7.2% 감소해 전체업종 중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 농·림·어업은 1.9%, 교육업 1.2%, 운송 및 물류창고업 1.1% 부동산업 1% 규모의 격차 감소가 확인됨
- 임금격차가 오히려 증가한 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험 등 공공분야로 각각 0.3% 증가하였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업종과 에너지공급업 역시 각각 0.2%, 0.1%씩 증가함

〈표 2-7〉 제도 시행 전·후 독일 산업별 임금격차 변화

산업	2014년 12월	2017년 6월	증감률(%)
경제전체	3.032	3.025	-0.2
농업, 임업, 어업	2.515	2.467	-1.9
광산업	2.069	2.07	0
제조업	2.239	2.239	0
에너지공급	3.422	3.425	0.1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3.874	3.883	0.2
건설업	1.747	1.743	-0.2
도소매업(Handel)	2.214	2.215	0
운송 및 물류창고업	2.796	2.766	-1.1
숙박 및 요식업	2.22	2.06	-7.2
ICT	3.247	3.243	-0.1
금융 및 보험서비스	2.721	2.715	-0.2
부동산	2.641	2.614	-1
자영업, 학술 및 기술 서비스	2.822	2.82	-0.1
기타 경제서비스	2.199	2.199	0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험	3.893	3.906	0.3
교육	4.097	4.049	-1.2
보건, 사회	3.077	3.064	-0.4
예술, 오락, 여가	3.26	3.256	-0.1
기타 서비스	3.311	3.308	-0.1
최저임금(8.5 유로) 미만 업종	2.545	2.399	-5.7

자료: 외교부(2017)

- 한편 독일의 최저임금제도 도입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의 강도가 강화되었다는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음)
  - 2016년 기업 1만6천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최저임금 영향을 받은 기업 4곳 중 1곳이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거나 특정 작업을 짧은 시간 안에 끝내도록 노동의 강도를 높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정은주, 2018)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품목의 물가가 상승함
  - 2016년 기준 택시비 12.1%, 출판물 5.9% 인상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인상됨
- 이외에 제도 시행 전 고용율은 이미 1.4~1.8%p정도 상승 추세로, 오히려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취업자가 약 4만 4천~6만 8천명 정도 추가 상승되었을 것이라는 분석결과도 언급되고 있음

### 3. 미국

- 미국의 최저임금은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FLSA)과 각 주의 최저임금 법령이 규율하고 있음
  - 연방의 최저시급은 1938년 발효된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의해 0.25달러로 시작됨
- 원칙적으로 의회는 저소득근로자들의 임금과 생활수준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주기적으로 개정해야하지만 실제로 연방 최저임금의 수준과 인상률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는 추세임
- 2012년 ‘15달러 쟁취 투쟁’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2013년 오바마 정부가 연방최저 임금 인상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지만 연방최저임금은 7.25달러로 10년째 동결되고 있음
- 미국의 연도별 연방최저임금과 최저임금 대상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음
  - 2007년 이래로 시간당 최저임금은 5.85달러에서 조금씩 상승하다가 2009년 7.25달러로 10년째 지속되어 있음
  - 그러나 최저임금 대상자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추이를 보인다 2018년 2.1%로 최저치를 기록함

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2813.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2813.html)

〈표 2-8〉 미국 연방최저임금 대상자 비율 추이

(단위: US \$, %)

연도	연방최저임금	최저임금 대상자 비율
2001	5.15	3
2002	5.15	3
2003	5.15	2.9
2004	5.15	2.7
2005	5.15	2.5
2006	5.15	2.2
2007	5.85	2.3
2008	6.55	3.0
2009	7.25	4.9
2010	7.25	6.0
2011	7.25	5.2
2012	7.25	4.7
2013	7.25	4.3
2014	7.25	3.9
2015	7.25	3.3
2016	7.25	2.7
2017	7.25	2.3
2018	7.25	2.1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s://www.bls.gov/>)

-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음
  - 외국선박에서 종사하는 어업근로자
  - 소규모 농장(500명 이하) 근로자
  - 계절 한정 사업장이나 유희용 사업장 근로자
  - 운전기사, 기사 도우미, 집꾼, 정비기사
  - 수수료를 받는 영업장 근로자
  - 신문 배달원
  - 임원, 관리직, 전문직, 그리고 외판영업직
  - 특정 컴퓨터 기술자

- 미국에는 연방최저임금 외에 각 주(州)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정해지는 州최저임금이 존재하고 있음
  - 콜롬비아 특별구를 포함한 29개 주<sup>8)</sup>는 연방최저임금(7.25달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연방최저임금이 10년 동안 동결되어 있더라도 주최저임금을 통해 각 주(州)별로 차등 적용해 옴
- 각 주(州)에 따라 주최저임금에 관한 규정 역시 차별화되어 있음
  - 동남부 지역의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테네시,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5개의 주는 주최저임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등은 주최저임금과 연방최저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쪽으로 규정함
  - 델라웨어 주는 인상된 연방최저임금이 현행 주최저임금보다 높을 시에만 연방최저임금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캔자스, 텍사스, 유타는 연방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에 한에서만 주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음
  - 인디애나, 미시간, 버몬트는 종업원 2명 이상, 아칸소, 일리노이, 네브라스카, 버지니아에서는 종업원 4명 이상, 그리고 조지아, 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 종업원 6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되고 있음
  - 몬타나 주에서는 연 매출액 11만 달러 이하의 사업주에게는 주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반면 미네소타에서는 연 매출액 62만 5,000달러 기준으로 최저임금률을 설정하고 있음
  - 애리조나, 오레곤 등은 매년 물가상승,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비용 등에 경제지표에 기반을 두어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음
  - 조지아 주의 주최저임금은 5.15달러로 연방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을 인상한 18개의 주 정부 중 11개 주가 법 제·개정을 통해 인상된 반면, 7개 주는 물가에 기반을 두어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함
  - 2018년 기준 워싱턴DC의 최저시급은 13.25달러로 미국 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외에 워싱턴DC를 포함한 10개 주<sup>9)</sup>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있음

8)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네바다, 알래스카, 몬태나, 애리조나, 하와이, 콜로라도, 뉴멕시코, 사우스다코타, 네브라스카, 미네소타, 미주리, 아칸소, 일리노이,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미시간,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델라웨어, 플로리다,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메인, 매사추세츠 등

9) 워싱턴DC,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 애리조나, 콜로라도, 메인 주, 뉴욕,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주

- 미국은 주 정부 내 시(city)와 카운티(county) 차원에서도 연방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음
  - 2014년 시애틀 시는 고용규모와 직장의료보험, 그리고 팁 수취 여부에 따라 최저시급 15달러 정책을 도입시켜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음
  - 2015년 5월 LA 시의회는 향후 5년에 걸쳐 최저임금을 현재 9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가결했으며, 애리조나, 콜로라도, 메인, 워싱턴 주도 이와 같은 흐름을 따르고 있음
- 2016년(\$10.50)→2017년(\$12)→2018년(\$13.25)→2019년(\$14.25)→2020년(\$15)

〈그림 2-8〉 2018년 기준 미국 주최저임금액



자료: the balance 홈페이지

- 미국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시간급으로 임금을 받는 16세 이상 노동자는 총 81.9만명으로 미국 전체 노동자의 58.5%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연방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43만 4천명이고, 연방최저임금 기준보다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1.3만명(2.1%)으로 나타남
-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격차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 등에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13년과 2017년 간 ‘최소 한번이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와의 최하위 10분위 계층에 속한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각각 5.2%, 2.2%로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여성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최저임금을 인상한 주의 경우에 5.1% 인상되었지만 그 반대의 주는 0.8% 인상에 그쳐 약 6.4배 정도의 격차가 나타남

- 또한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대상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보다 2~2.5달러 이상 높게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상승되는 ‘파급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 중이기는 하나 고용 및 실업 지표, 노동시간, 음식점 및 주점 등의 업체 수와 폐업, 고용 및 해고 추이 등을 살펴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 및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되고 있음 (이재훈, 2018)

#### 4. 일본

- 1959년 4월 15일 최저임금법 제정과 함께 실시된 일본의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과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음
- 일본의 최저임금제도는 크게 3종류로 (1) 지역별 최저임금, (2) 산업별 최저임금, (3) 노동협약 확장 적용에 의한 지역적 최저임금으로 차등적용하고 있음
  - 지역별 최저임금: 직종과 업종에 관계없이 각 지역(도도부현)마다 개별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
  - 산업별 최저임금: 각 지역 내에서도 특정 산업에 종속되어 있는 관련 노사의 신청에 따라 지역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됨
  - 노동협약 확장 적용에 의한 지역적 최저임금: 일정 지역의 같은 업종의 근로자 및 사용자 대부분(약 3분의 2 이상)에게 최저임금을 정한 노동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노동조합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전부의 합의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 후생국 대신 또는 지역(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최저임금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노동협약의 규정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김명중, 2006)
- 이처럼 지방자치 전통을 살리고 지역 및 산업별로 생성된 일본의 최저임금은 종류만 240개인 것으로 확인됨
- 최저임금의 적용 예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음
  - 정신적 및 신체적 장애에 의해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근로자
  - 이미 노동을 하고 있는 자
  - 인정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소정 노동시간이 특별히 짧거나, 경이한 업무 혹은 단기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 일본 최저임금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최저임금 기준안이 설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별로 최저임금이 매년 개정되고 있다는 점임
  -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정하면 각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 이를 기준으로 지역경제상황에 맞게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함
  - 전국 47개 지자체를 지역소득, 물가 등 19개의 경제지표를 기준에 의해 A, B, C, D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음
    - A 지역에는 도쿄도(東京都)·오사카부(大阪府)·아이치현(愛知縣) 등 주로 대도시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D 지역에는 경제규모가 작은 후쿠시마현(福島縣)·오키나와현(沖縄縣)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8년 기준 전국 평균 최저임금 인상금액은 26엔으로 결정되었으며, 각 그룹에 맞는 기준금액에 따라 결정한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폭은 <표 2-9>와 같음
  - A 지역그룹에 속한 모든 지역은 중앙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액과 동일하게 설정
  - B 지역그룹은 1개 지역을 제외한 10개 지역에서 기준액과 일치
  - C 지역그룹은 7개 지역은 기준금액보다 1엔 더 높게 설정된 반면, 나머지 지역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
  - D 지역그룹은 8개 지역은 기준금액보다 1엔 더 높게 설정하고 그 외에 지역들은 2엔 더 높게 책정

<표 2-9> 2018년 일본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기준액

(단위: 엔)

그룹 (지역별)	광역지자체	2017년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2018년 기준액	2018년 인상액	기준액과의 격차
A	도쿄	958	985	27	27	0
	가나가와	956	983		27	0
	오사카	909	936		27	0
	사이타마	871	898		27	0
	아이치	871	898		27	0
	지바	868	895		27	0
B	쿄토	856	882	26	26	0
	효고	844	871		27	1
	시즈오카	832	858		26	0
	미에	820	846		26	0
	히로시마	818	844		26	0
	시가	813	839		26	0
	토치기	800	826		26	0

그룹 (지역별)	광역지자체	2017년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2018년 기준액	2018년 인상액	기준액과의 격차
	이바라키	796	822		26	0
	도야마	795	821		26	0
	나가노	795	821		26	0
	야마나시	784	810		26	0
C	홋카이도	810	835	25	25	0
	기후	800	825		25	0
	후쿠오카	789	814		25	0
	나라	786	811		25	0
	군마	783	809		26	1
	이시오카	781	806		25	0
	오키야마	781	807		26	1
	니가타	778	803		26	1
	후쿠이	778	803		25	0
	와가야마	777	803		26	1
	야마구치	777	802		25	0
	미야기	772	798		26	1
	가가와	766	792		26	1
	도쿠시마	740	766		26	1
D	후쿠시마	748	772	23	24	1
	시마네	740	764		24	1
	야마가타	739	763		24	1
	에히메	739	764		25	2
	아오모리	738	762		24	1
	이와테	738	762		24	1
	아키타	738	762		24	1
	돗토리	738	762		24	1
	코우치	737	762		25	2
	사가	737	762		25	2
	나గా나키	737	762		25	2
	구마모토	737	762		25	2
	오오이타	737	762		25	2
	미야자키	737	762		25	2
	가고시마	737	761		24	1
오кина와	737	762	25	2		
전국 가중평균		848	874	26		

자료: 오학수(2019) 재인용

- 한편 지역 및 산업 상황에 따른 맞춤형 최저임금제도의 부작용 역시 언급되고 있음
  -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도농 양극화 문제로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된 지역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 일본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인 도쿄와 가장 낮은 오키나와의 최저임금 격차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으며 노동력이 시급이 높은 지역으로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함
    -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역경제와 무관하게 지역별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는 부작용도 존재
  - 업종별 최저임금 역시 신청요건 절차가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 노사 간 동종 정규직 노동자의 1,000명 이상에 적용되는 노사의 최저임금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새롭게 최저임금을 설정할 때 필요한 신청요건은 당해 산업 및 직업 정규직 노동자의 1/2 이상이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단체협약 당사자인 노사 양측의 합의가 필요함(오학수, 2019)

## 5. 호주

-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높은 최저시급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는 ‘2009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을 기반으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음
- 물가상승률과 구매력(Purchasing Power Parities: PPPs)지수를 감안할 경우 2018년 호주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함
  - 호주 \$12.14, 룩셈부르크 \$11.82, 프랑스 \$11.49, 독일 \$10.87, 덴마크 \$10.44, 벨기에 \$10.38, 뉴질랜드 \$10.07, 영국 \$9.64, 아일랜드 \$9.62, 캐나다 \$9.52 순
- 호주의 최저임금 결정기구인 공정근로위원회는 매년 다양한 경제지표를 참고하여 국가 최저임금과 개별 최저임금을 모두 검토하고 변경이나 적용 폐지 혹은 신설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
  - 위원회는 우선 국가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어느 정도 형성한 뒤에 개별 최저임금을 따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또한 소속 및 지위에 상관없이 호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최저임금 인상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
- 호주의 최저임금에는 현물급여 및 숙식비, 휴일 근로수당, 초과근무, 휴가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호주의 최근 10년간 시간당 최저임금과 최저주급은 최저임금은 <표 2-10>과 같음
  - 2019년 7월 기준 호주의 최저임금은 동년 대비 3% 상승한 AUD\$ 19.49로 책정됨

〈표 2-10〉 연도별 호주 최저임금 및 최저주급

년도	최저시급	최저주급
2009	14.31	543.78
2010	14.31	569.9
2011	15	589.3
2012	15.51	606.4
2013	15.96	622.2
2014	16.37	640.9
2015	16.87	656.9
2016	17.7	672.7
2017	18.29	694.9
2018	18.93	719.2
2019	19.49	740.8

자료: Trading Economics(<https://tradingeconomics.com/>), 주 38시간 근로 기준, 호주달러 기준

- 호주의 최저임금 특례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음
  - 지역정부 근로자
  - 민간부분의 비헌법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
  - 청소년
  - 견습생
  - 지원급료제도 하에서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근로자
- 호주의 최저임금제는 (1) 연령별, (2) 업종별, 그리고 (3) 숙련도별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 영국과 같이 호주는 국가 최저임금 지급 기준을 만 21세로 지정하고 그 이하 연령의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함

〈표 2-11〉 2019년 기준 호주 연령별 최저임금 현황

(단위: %, AUD\$)

연령	최저임금 대비 적용율	최저시급	최저주급(38시간)
20세	97.7	18.49	702.66
19세	82.5	15.62	593.34
18세	68.3	12.93	491.21
17세	57.8	10.94	415.70
16세	47.3	8.95	340.18
16세 미만	36.8	6.97	264.67

자료: 최저임금위원회(2019)

-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약 154개의 산업 및 직업군에 대해 각기 다른 최저임금액, 최소 근로환경 제공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제하고 있음
  -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제는 공정노동위원회가 4년마다 검토 및 개정함
  - 2018년 전체산업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6년 대비 2% 가량 떨어짐
  - 2018년 기준 숙박 및 음식점, 정보통신업, 보건·복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6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2〉 호주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률

(단위: %)

적용 업종	영향률 <sup>10)</sup>	
	2016년	2018년
전체산업	24.5	22.5
광산업	-	0.9
건설업	19.7	16.6
도매업	16.8	16.1
소매업	34.5	30.1
숙박 및 음식점	42.7	44.9
정보통신업	5.5	7.1
금융·보험업	-	5.2
행정·지원	42.1	41.3
공공행정·안전	18.1	10.9
보건·복지	28.8	31.7

자료: 최저임금위원회(2019)

- 호주 최저임금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의 숙련도(기술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는 점임
  - 21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숙련도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분류 가능하며 최소 근로 조건은 업종별 최저임금제에 명시되어 있음
  - 숙련도가 가장 낮은 C14 등급의 근로자는 호주달러 기준 시간당 18.93달러를 지급받는 반면 숙련도가 최상급인 C2 등급의 근로자는 시간당 29.80달러를 받을 수 있음
  - 이와 같은 숙련도 등급은 학력과 경력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최소 AUD \$ 0.54 달러부터 최고 10.87달러까지 차이가 남

10) 영향률은 산업별 총 근로자 대비 산업별 최저임금만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의미함

〈표 2-13〉 2019년 기준 호주 숙련도별 최저임금 현황

(단위: AUD\$)

숙련도 등급	시간당 최저임금	비고
C14	18.93	38시간 이상 트레이닝 수료
C12	20.22	Certificate I 혹은 Certificate II
C9	22.73	Certificate III 혹은 3년이상 경력
C7	24.04	Certificate IV
C3	27.86	Advanced Diploma 혹은 4년 경력
C2 a	28.55	Advanced Diploma 보유 혹은 관리감독 가능 수준의 기술 보유
C2 b	29.80	Advanced Diploma 보유 및 경력 소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2019)

- 이외에도 견습생 제도(Apprenticeship)를 이용하여 근로하는 21세 미만 근로자들은 숙련도에 따라 차등화된 최저임금을 적용받음(김강식, 2017)
  - 21세 이상 성인 견습생에게는 최소 시간당 AUD\$ 16.37달러, 주급 AUD\$ 622.20 달러를 지급함

〈표 2-14〉 2019년 기준 호주 견습생 경력별 최저임금 현황

(단위: %, AUD\$)

경력	최저임금 대비 적용율	최저시급	최저주급(38시간)
4년차	95	17.98	683.24
3년차	80	15.14	575.36
2년차	65	12.30	467.48
1년차	55	10.41	395.56

자료: 최저임금위원회(2019)

- 국가 최저임금은 해당 직종이나 산업에 대한 차등화된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음
  - 국가 최저임금을 받는 21세 이상 근로자는 전체근로자의 1.9%에 해당하는 반면 개별 최저임금 대상자는 22.7%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일부 주(州)정부는 국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州)정부 관련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 남호주(South Australia)를 사례로 살펴보면 시간당 주최저임금은 2018년 AUD\$ 18.62달러에서 2019년 AUD\$ 19.49달러로 약 3.5% 인상됨
  - 이는 2019년 6월 기준 국가 최저임금과 비교시 주최저임금이 AUD\$ 0.34달러 더 높게 책정된 것임

〈표 2-15〉 2019년 기준 남호주의 연령별 최저임금 현황

(단위: %, AUD\$)

연령	최저임금 대비 적용율	최저시급	최저주급(38시간)
20세	90	17.34	659.10
19세	80	15.42	585.80
18세	70	13.49	512.60
17세	60	11.56	439.40
17세 미만	50	9.64	366.20

자료: 최저임금위원회(2019)

- 근로자의 숙련별 주최저임금은 경력과 무관하게 국가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음

〈표 2-16〉 2019년 기준 호주 견습생 경력별 최저임금 현황

(단위: %, A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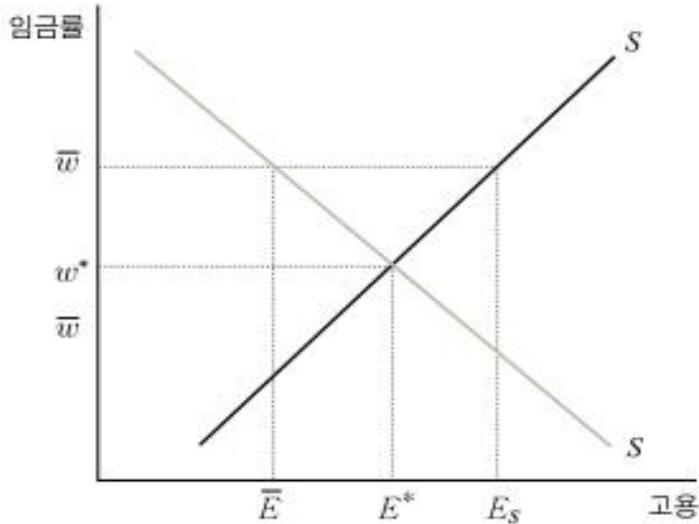
경력	최저임금 대비 적용율	최저시급	최저주급(38시간)
성인 견습생 (21세 이상)	100	19.27	732.30
4년차	88	16.96	644.40
3년차	75	14.45	549.20
2년차	55	10.60	402.80
1년차	42	8.09	307.60

자료: 최저임금위원회(2019)

### 제3절 이론적 배경

- 최저임금과 실업률의 관계에 관한 기본 이론
  - 실업률은 최저임금 수준 및 노동수요, 공급 탄력도에 의해 결정됨
  - 실업률은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노동 수요탄력도와 공급탄력도가 클수록 증가함
  - 고용의 감소는 최저임금과 균형임금의 격차, 노동수요 탄력성에 의해 결정됨
  -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적인 경우 실직하지 않은 근로자의 소득보호 목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직장이 없는 노동자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함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기존 근로자의 임금향상 효과보다 크면 사회 후생에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크게 됨(안태현 2009)
  
- 완전경쟁시장 모형: 신고전적 기본모형, 최저임금 인상시 실업률 증가시키는 효과
  - 완전경쟁에서는 노동력의 질이 균일하고 시장에서의 정보가 완벽함 가정
  - 이 모형에서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정해진 균형 임금보다 높을 경우 노동수요는 감소하고 이에 따라 고용이 줄어들며 노동공급 과잉으로 실업이 증가함
  - 이를 <그림 2-9>를 통해 확인하면 임금( $w^*$ ) 및 고용수준( $E^*$ )은 수요·공급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결정되며
  -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수준에 따라 노동공급 및 노동수요가 일치하게 되면 완전고용이 달성된 것으로 보고 이때는 실업이 발생하지 않음
  - 시장균형임금( $w^*$ )보다 높게 최저임금( $\bar{w}$ )이 정해지면 수요량은 수요곡선을 따라 하락해 고용량이  $\bar{E}$ 로 감소하게 되며 이때 발생하는 실업의 크기는  $E^* - \bar{E}$ 가 됨
  - 노동공급량 부족으로 임금수준이 인상되면서 노동시장으로의 추가 진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추가 실업이 발생되고 그 크기는  $E_s - \bar{E}$  규모임
  - 즉,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을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실직이 발생하는 한편 노동시장으로의 추가진입에 의해 추가 실직이 발생하는 효과가 나타나며 이때의 실업률은  $(E_s - \bar{E})/E_s$ 로 나타남
  - 고용감소를 의미하는  $(E^* - \bar{E})$  는 최저임금과 균형임금의 격차 그리고 노동수요 탄력성에 따라 결정됨

〈그림 2-9〉 완전경쟁적 노동시장과 최저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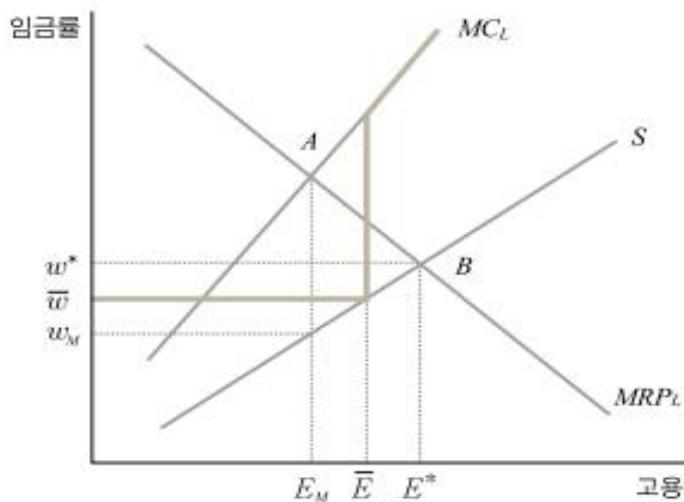


자료: 안태현(한국노동연구원, 2009)

- 수요독점시장 모형 :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
  - 노동수요가 독점인 수요독점 시장에서는 최저임금의 도입(인상)을 통해 고용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주어진 가격 하에서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완전경쟁시장과 달리 수요독점기업은 〈그림 2-10〉과 같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동의 한계비용( $MC_D$ )과 한계생산수입( $MRP_D$ )이 일치되는 수준( $E_M$ )에서 고용을 결정함
  - 수요독점시장에서 결정되는 고용 수준은 완전경쟁시장 고용 수준보다 낮으며 ( $E_M < E^*$ ) 임금 역시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임금 수준보다 낮음( $w_M < w^*$ ).
  - 이러한 수요독점시장 하에서는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임금( $w^*$ )보다 최저임금( $\bar{w}$ )이 낮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증가를 불러옴
  - 최저임금이 완전경쟁시장의 균형보다 높아도 일정 수준 이하에서 책정되는 경우 수요 독점시장의 균형고용( $E_M$ )보다 고용이 높아짐
  - 수요독점 여부는 노동수요자인 개별 기업의 임금결정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됨
    - 예를 들어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으로 원하는 만큼 고용이 가능하면 완전 경쟁적 시장인 반면 고용 증가를 위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수요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것임

- 수요 독점성은 이직으로 드는 비용이 크고 노동의 이동이 활발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외에 다수의 노동수요자가 있더라도 고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실태를 감독하기 힘든 상황일 때,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태업의 유인을 줄여주는 경우 등이 있음
- 수요 독점력이 있을 경우 균형에서는 항상 빈 일자리가 발생하는데 더 많은 고용이 기업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추가 인력 고용시 임금을 올려야 하므로 추가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임
- 고용감소를 일으키지 않는 최저임금의 인상 범위는 노동공급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되며, 탄력성이 클 때 그 범위가 작게 나타남

〈그림 2-10〉 수요독점적 노동시장과 최저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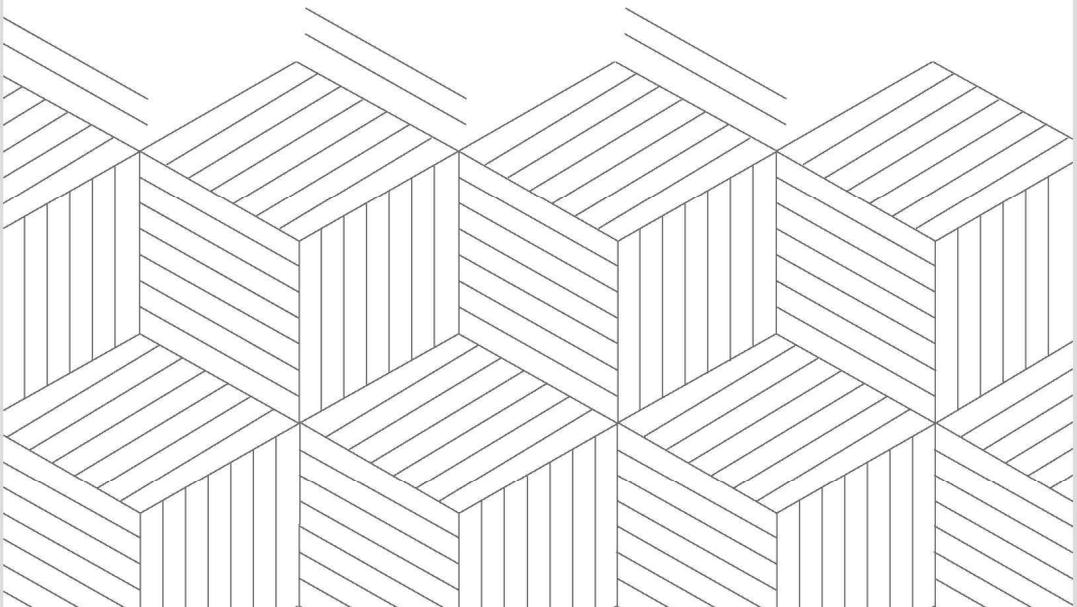
자료: 안태현(한국노동연구원, 2009)



# 제3장 최저임금 및 고용시장 현황

제1절 최저임금 현황

제2절 전국 및 수원시 고용시장 현황





## 제3장 최저임금 및 고용시장 현황

### 제1절 최저임금 현황

#### 1. 최저임금 변화 추이

- 국내 최저임금은 2019년 현재 시간당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함
- 2018년 2000년 이후 2001년(16.6%) 다음으로 가장 급격한 16.4% 인상이 단행되었으며, 2019년에는 다소 완화된 10.9% 인상이 이루어짐
  - 시간당 최저임금 변화: 6,470원(2017)→7,530원(2018)→8,350원(2019)→8,570원(2020년 안)
  - 최저임금 인상률 변화: 7.3%(2017) →16.4%(2018) →10.9%(2019) →2.9%(2020년 안)
- 2018년 인상률 16.4%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인상률 8.4%의 약 2배 규모로 인상 자체 보다는 급격한 인상폭으로 인해 고용 및 실업률, 물가, 소득분배 등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슈의 쟁점이 되어 옴
  - 최저임금은 이윤 증가, 물가 상승 등에 비추어 증가하거나 유지될 수밖에 없으나 증가 규모에 따라 실업률 증가, 물가 상승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이에 대한 찬·반(긍정·부정적) 견해 및 국내·외 사례는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음
- 2020년에는 고용시장 및 경제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2019년 대비 시간당 240원 증가한 8,570원으로 인상안이 결정됨: 2.9% 증가
  - 이는 당초 계획인 2020년 시간당 10,000원까지 인상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인상폭을 소폭으로 조정한 결과임

〈그림 3-1〉 시간당 최저임금 및 전년대비 인상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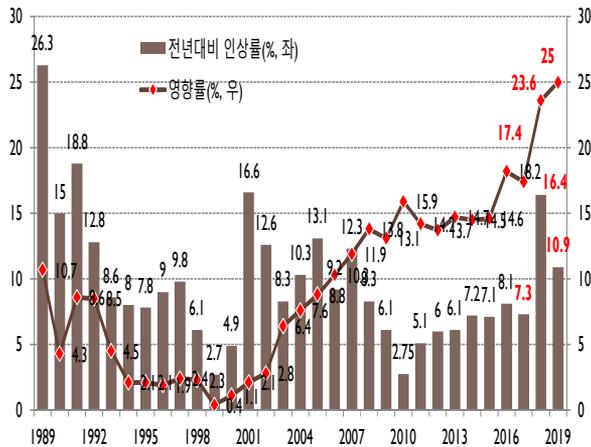


## 2. 최저임금 영향률

### 1) 통합 전산업 영향률

-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됨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근로자의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2018년 23.6%로 전년대비 6.2%p 증가함
  - 총 19,627천명의 적용대상 근로자 중 수혜 대상 근로자는 4,625천명으로 전년대비 수혜대상 근로자가 1,259천명 증가
  - 2018년 영향률 변화분 6.2%p의 변화는 직전년도까지 8년 평균대비 30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임
    - 2010부터 2017년까지 평균 영향률 변화는 0.2%p
- 2019년에는 1.4%p 증가한 25%로 전망되고 있음
  - 2019년 수혜근로자 수는 전년대비 380천명 많은, 2010년 대비로는 2배 가까이 증가한 5,005천명으로 추산됨

〈그림 3-2〉 최저임금 영향률 및 전년대비 인상률



〈표 3-1〉 최저임금 영향률 변화

연도	영향률 (%)	영향률변화 (%p)	적용대상 근로자수 (천명)	수혜 근로자 수 (천명)
2010	15.9	-	16,103	2,566
2011	14.2	-1.7	16,479	2,336
2012	13.7	-0.5	17,048	2,343
2013	14.7	1	17,510	2,582
2014	14.5	-0.2	17,734	2,565
2015	14.6	0.1	18,240	2,668
2016	18.2	3.6	18,776	3,420
2017	17.4	-0.8	19,312	3,366
2018	23.6	6.2	19,627	4,625
2019	25	1.4	20,006	5,005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최저임금 적용근로자 수: 상용·임시 및 일용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수
- 최저임금 수혜근로자 수: 최저임금 인상계획 미만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로 인상이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 수
- 영향률: 수혜근로자 수/적용대상 근로자 수 X 100

## 2) 사업체 규모별 최저임금 영향률(추정치)

- 김강식(2017)이 2018년 7,530원 인상시 사업체 규모별 산업대분류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률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 즉 통상임금 기준으로 볼 때 1~4인 근로자규모 사업체가 받는 영향률이 38.9%로 가장 크게 나타나며 규모가 클수록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 5~9인 사업장 22.2%, 10~9인 17.6%, 100~299인 14.8%, 300인 이상 4.6%

## 3) 산업분류별 최저임금 영향률(추정치)

- 산업별 분류에서는 숙박·음식업 분야가 52.2%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동산임대업(46.7%), 예술여가분야(37.2%), 기타서비스업(32.0%), 도소매업(26.9%), 운수업(24.9%) 등이 높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됨
- 제조업분야 영향률은 14.5%로 서비스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됨

## 4) 임금분위 및 고용형태별 최저임금 영향률(추정치)

- 임금소득은 고정임금(월평균 정액급여에 월평균 고정상여금 합산분)을 5분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로 분위 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이 많은 소득층을 의미함
  - 즉 1분위가 가장 저임금소득층에 속함
- 분석결과 임금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소득자층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시 66.9%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됨
- 2분위 저임금 소득층 역시 약 31%의 높은 영향률을 보이고 있음
- 중간 소득 이상인 3분위 이상 임금 소득자들의 영향률은 한 자릿대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됨
  - 3분위 5.7%, 4분위 1.1%, 5분위 1.1%
- 고용 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33.4%로 정규직 13.1%의 영향률 대비 3배 가까운 규모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됨

〈표 3-2〉 사업체규모별·산업분류별·임금분위별·고용형태별 최저임금 인상 영향률 변화(추정치)

사업체규모	사업체규모별		산업대분류별		
	근로자수	영향률	산업분류	근로자수	영향률
전체	15,354	21.6	농림어업	36	21.8
1~4인	4,077	38.9	광업	14	10.4
5~9인	2,036	22.2	제조업	3,630	14.5
10~9인	2,895	17.6	전기가스업	64	1.4
30~99인	2,661	15.9	폐기물환경	76	13.4
100~299인	1,739	14.8	건설업	1,186	8.9
300인 이상	1,947	4.6	도소매업	1,983	26.9
임금분위별			운수업	734	24.9
임금분위	근로자수	영향률	숙박음식업	1,117	52.2
1/5분위	3,172	66.9	정보서비스	501	8.1
2/5분위	3,037	30.9	금융보험업	699	17.1
3/5분위	3,023	5.7	부동산임대	399	46.7
4/5분위	3,055	1.7	기술서비스	915	6.4
5/5분위	3,066	1.1	사업지원	1,037	19.4
고용형태별			교육서비스	777	15.3
형태	근로자수	영향률	보건복지	1,380	26.9
정규직	11,102	15.1	예술여가	215	37.2
비정규직	4,253	38.6	기타서비스	592	32.0

자료: 김강식(2017) 재정리

주: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2018년, 16.4%)으로 인상시를 가정한 추정치임

## 제2절 전국 및 수원시 고용시장 현황

### 1. 실업률

- 2018년 상반기 기준 전국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기대비 0.1%p 하락하였으나 전기 3.2%대비 0.9%p 증가
  - 전년 동기의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계획이 발표된 시기로 이로 인한 일시적인 실업률 증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3.1%~3.9%대의 실업률 대비 다소 증가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 같은 기간 경기도 실업률은 4.0%로 전국 대비 낮은 실업률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수원시의 경우 4.8%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음
- 수원시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전국, 경기도 대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수원시가 타 지역 대비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특히 2018년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전국과 경기도 지역 실업률은 하락한 반면 수원시의 경우 실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 고용률

- 2018년 상반기 기준 전국 고용률은 60.9%로 전기대비 0.5%p, 전년 동기대비 0.1%p 하락함
- 경기도는 같은 기간 62.3%로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기대비 0.4%p 하락하였고 전년동기 대비로는 0.2%p 증가함
- 수원시는 2018년 상반기 전국, 경기도 대비 가장 높은 63.1%의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수원시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전국 및 경기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하반기 최고 수준인 63.8% 이후 2016년 상반기 62.4%로 하락하였다가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생산가능인구의 고용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원시의 경우 실업률 증가 추이 대비 생산가능 연령대의 고용상황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함

### 3. 경제활동참가율

-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63.5%로 전기 대비 0.1%p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대비로는 0.1%p 하락함
- 경기도는 같은 기간 64.9%로 전국 및 수원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기 대비 0.1%p 증가한 수준을 나타냄
  - 전국 현황과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대비로는 0.3%p 하락
- 수원시는 같은 2018년 상반기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61.6%를 나타내고 있으나 2016년 하반기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전년 동기대비 전국, 경기도 감소 추이대비 수원시는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반적으로 경기상황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표로 수원시 경기 상황이 빠르지는 않으나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양은순, 2019)

〈표 3-3〉 전국 및 수원시 고용시장 현황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전국	경기도	수원시	전국	경기도	수원시	전국	경기도	수원시
2014 1/2	3.8	3.9	4.3	60.9	61.7	61.8	63.3	64.2	60.9
2014 2/2	3.2	2.9	2.6	61.1	62.4	62.5	63.1	64.2	60.1
2015 1/2	3.9	4.0	5.0	60.6	62.0	63.0	63.0	64.5	61.9
2015 2/2	3.1	3.4	3.5	61.2	62.0	63.8	63.1	64.2	61.8
2016 1/2	3.9	4.6	4.7	60.5	61.5	62.4	62.9	64.4	61.0
2016 2/2	3.3	3.7	3.6	61.2	61.9	62.5	63.3	64.3	60.1
2017 1/2	4.2	4.6	3.6	61.0	62.1	62.3	63.6	65.2	60.1
2017 2/2	3.2	3.3	3.9	61.4	62.7	62.5	63.4	64.8	60.4
2018 1/2	4.1	4.0	4.8	60.9	62.3	63.1	63.5	64.9	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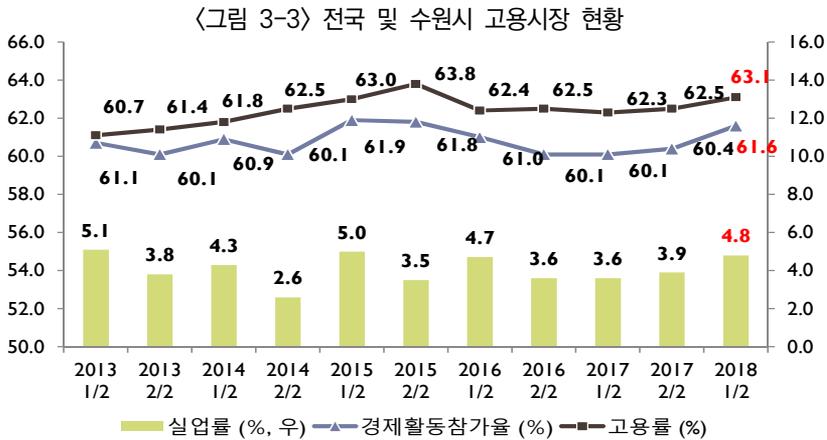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실업률** : 취업을 희망하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중을 의미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즉시 일을 하기위하여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의미  
 . **취업자** : 조사대상기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일시휴직자, 또는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  
 . **실업자** : 조사대상기간 중 일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지난 4주간)을 하였으며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 **고용률** :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중 취업자 수의 비중(노동력 활용 정도를 의미)  
 $고용률 = (15-64세 취업자 수 / 15-64세 인구) * 100$

\* **경제활동참가율** :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중, 일반적으로 경기상황과 같은 방향으로 변동함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홈페이지 재정리



#### 4. 수원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수원시 총 취업자 수는 2018년 상반기 기준 6,039천명으로 이중 임금 근로자는 전체의 81.6%인 4,926천명을 차지함
- 총 취업자 수는 2018년 상반기 전기 대비 1.3% 증가함
-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은 임금 근로자의 23.2%로 1,257천명 규모를 보임(2018년 하반기 기준)
- 최저임금 인상 계획 발표 직후인 2017년 하반기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는 전기 대비 31.4% 감소하며 가장 큰 반응을 보임
- 2018년 상반기 기준 총 임금 근로자 수는 전기 대비 1.1% 하락하였으며, 이 중 상용 근로자 취업자 수가 5.4% 하락하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는 기저효과로 16% 증가하게 나타남

〈표 3-4〉 수원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현황

(천명)	계	증가율	임금근로자	증가율	상용근로자	증가율	임시/일용근로자	증가율	비임금근로자	증가율
2013 1/2	540.4	-	435.4	-	314.1	-	121.3	-	105.0	-
2013 2/2	549.3	1.6	450.4	3.4	320.9	2.2	129.5	6.8	98.9	-5.8
2014 1/2	564.9	2.8	464.5	3.1	339.7	5.9	124.8	-3.6	100.3	1.4
2014 2/2	574.8	1.8	472.1	1.6	341.2	0.4	130.8	4.8	102.7	2.4
2015 1/2	583.3	1.5	489.9	3.8	343.5	0.7	146.4	11.9	93.4	-9.1
2015 2/2	594.5	1.9	493.4	0.7	360.1	4.8	133.2	-9.0	101.2	8.4
2016 1/2	584.5	-1.7	476.4	-3.4	360.9	0.2	115.5	-13.3	108.2	6.9
2016 2/2	586.8	0.4	483.8	1.6	363.1	0.6	120.7	4.5	103.1	-4.7
2017 1/2	590.4	0.6	487.9	0.8	344.5	-5.1	143.5	18.9	102.5	-0.6
2017 2/2	596.2	1.0	498.1	2.1	399.7	16.0	98.5	-31.4	98.0	-4.4
2018 1/2	603.9	1.3	492.6	-1.1	378.2	-5.4	114.3	16.0	111.3	13.6
평균	582.9	1.1	480.9	1.3	355.2	2.0	125.7	0.6	102.0	0.8
비중			81.6		76.8		23.2		18.4	

자료: KOSIS 경기도 수원시 기본 통계

### 5. 수원시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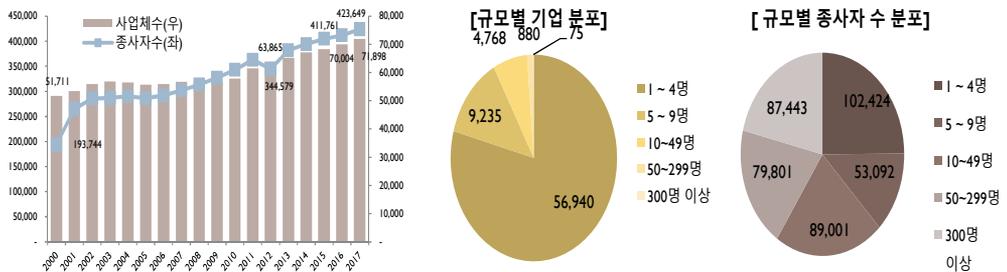
- 2017년 기준 수원시 총 사업체 수는 71,898개로 423,649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음
- 2016년 대비 1,894개의 업체가 증가하였으며 11,888명의 종사자 수가 증가함
  - 2016년 70,004개 업체, 종사자 423,649명 기준임
-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2.9% 증가한 규모로 5~9명 규모의 사업장에서 9.9%의 가장 높은 증가 규모를 보였으며,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종사자 수가 전년대비 0.5% 감소함
- 규모별로는 1~4명 규모 사업장 비중이 전체의 약 8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전체의 0.1% 규모에 그치고 있음
- 종사자 수는 1~4명 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25%, 10~49명 규모 사업장이 21%, 300명 이상 규모 사업장이 21%를 차지
-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은 업체 수 대비 수원시 종사자 수의 21%를 차지하는 등 1개 업체 당 평균 1,160명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음

〈표 3-5〉 수원시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2017년)

	합계	1 ~ 4명	5 ~ 9명	10~49명	50~299명	300명 이상
사업체 수 (개)	71,898	56,940	9,235	4,768	880	75
비중(%)	100.0	79.2	12.8	6.6	1.2	0.1
종사자 수 (명)	423,649	105,268	58,371	90,810	82,199	87,001
비중(%)	100.0	24.8	13.8	21.4	19.4	20.5
전년대비 증가율(%)	2.9	2.8	9.9	2.0	3.0	-0.5
규모별 평균 (명)	5.9	1.8	6.3	19.0	93.4	1160.0

자료: KOSIS 경기도 수원시 기본 통계, 2017년 기준

〈그림 3-4〉 수원시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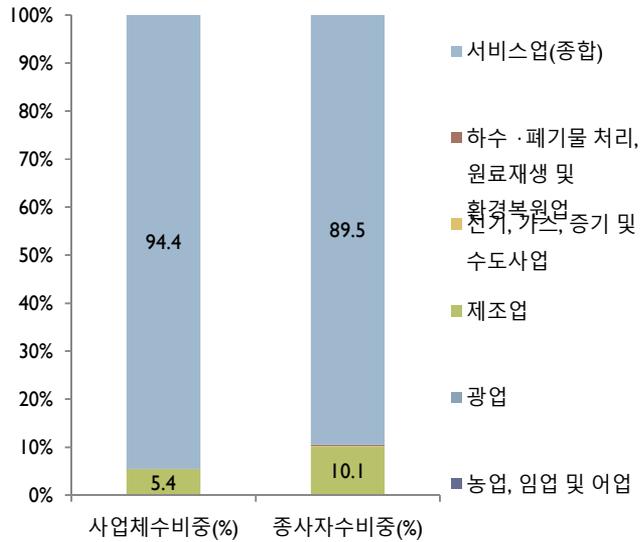
## 6. 수원시 업종별 종사자

- 2017년 기준 수원시 전산업 종사자 수는 423,649명으로 최근 5년 평균 2.6% 증가함
-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 수가 전체의 1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평균 3.2% 늘어남

〈표 3-6〉 수원시 업종별 종사자 수 분포

수원시 종사자수 추이	2013	2014	2015	2016	2017	구성비 (2017)	연평균 증가율
합 계	382,066	394,141	404,570	411,761	423,649	100.0	2.6
농업, 임업 및 어업	247	215	191	196	205	0.0	- 4.2
광업	-	-	-	-	-	-	-
제조업	41,590	38,775	39,536	39,903	42,643	10.1	0.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60	738	786	829	654	0.2	0.7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693	637	728	690	1,012	0.2	11.9
건설업	15,575	20,337	20,947	22,230	23,943	5.7	11.9
도매 및 소매업	50,362	52,972	55,797	56,115	57,152	13.5	3.2
운수업	18,101	19,735	18,934	19,171	18,536	4.4	0.7
숙박 및 음식점업	40,522	42,730	45,028	44,634	47,389	11.2	4.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410	5,159	6,092	6,239	6,524	1.5	5.1
금융 및 보험업	14,406	14,193	14,248	14,337	14,822	3.5	0.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805	11,051	11,582	12,512	11,489	2.7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3,802	47,542	45,302	46,396	45,124	10.7	0.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4,617	31,490	33,967	32,806	33,095	7.8	- 0.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3,196	13,735	15,510	15,416	16,055	3.8	5.1
교육 서비스업	36,420	37,091	36,612	36,692	38,622	9.1	1.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8,513	30,246	31,576	34,085	38,695	9.1	8.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6,643	6,766	6,979	8,030	8,724	2.1	7.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504	20,729	20,755	21,480	18,965	4.5	-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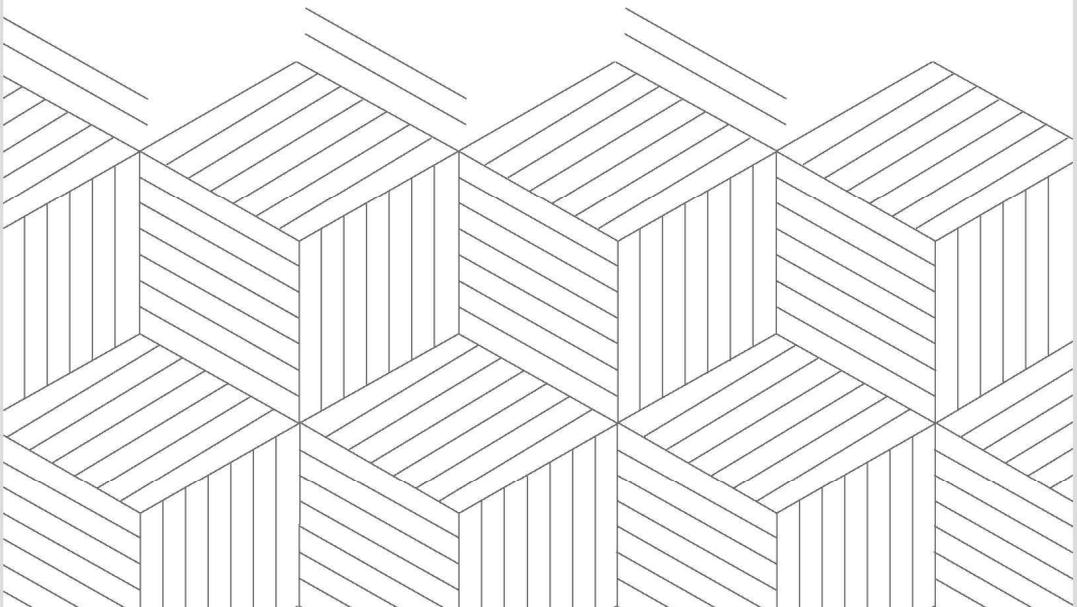
〈그림 3-5〉 수원시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중



- 그 외 숙박 및 음식점업(11.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7%) 등 서비스업 종사자 수 비중이 전체 종사자의 89.5%를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전체의 10.1% 규모로 수원시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
-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 종사자와 건설업분야 종사자 수는 최근 5년 평균 11.9%의 증가율로 가장 많이 증가함
- 그 외에 정보통신업(5.1%)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농림어업(-4.2%), 협회 및 단체(-1.7%), 시설물관리 및 사업지원(-0.9%) 분야 종사자는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제4장 실증분석 데이터 및 모형

제1절 실증분석 데이터  
제2절 실증분석 모형





## 제4장 실증분석 데이터 및 모형

### 제1절 실증분석 데이터<sup>11)</sup>

#### 1. 전국 데이터

- 전국 데이터는 2000년 1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가계 (최종)소비, 가처분소득, 국내총생산(GDP), 최저임금, 실업률의 분기별 데이터를 활용함
- 소비, GDP, 가처분소득 데이터는 분기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계절성을 없애기 위해 미국 센서스국에서 개발한 census X-12 ARIMA 방법을 활용해 계절조정 함
- 소비, GDP 및 가처분소득, 전국 최저임금은 소비자가격지수(CPI)로 실질화해 추정에 활용함
- 최저임금의 경우 연간데이터를 분기화(simple exponential smoothing)해 분석에 활용함
- 단위근 검정결과 모든 변수에 단위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각각의 변수들을 로그차분해 사용함
  - 단위근 검정은 추세 및 상수항을 포함하지 않은 ADF-test(Augmented Dickey-Fuller 검정) 수행 결과임

〈표 4-1〉 전국 데이터 단위근 검정 결과

H0	t-Statistic	Prob.*
LNCONS has a unit root	-1.733635	0.4103
LNCPI has a unit root	-1.866880	0.3458
LNGDP has a unit root	-2.379148	0.1511
LNMINWAGSM has a unit root	-0.768877	0.8213
LNUNEMPL has a unit root	-2.733295	0.0734

11) 각각의 데이터는 통계청, 한국은행, 수원시 통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추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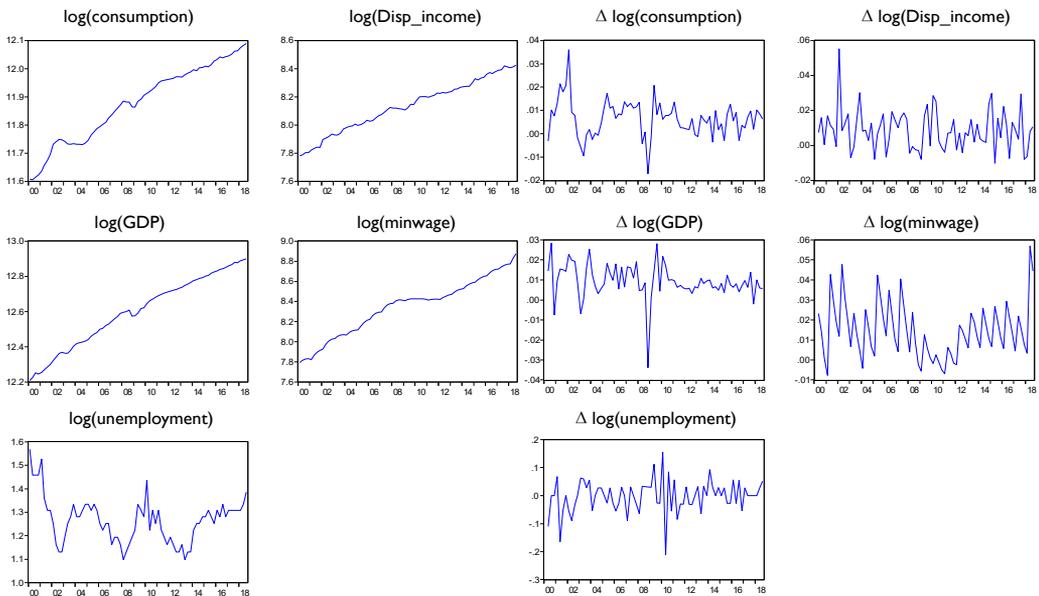
- <표 4-2>는 로그 차분한 각 변수의 평균, 중간값,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및 3차, 4차승으로 나타나는 대칭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Jarque-Bera 정규성 테스트 결과 및 변수간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음
- 상관계수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은 모든 변수들과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을 높이고, 가처분소득 증가, GDP증가, 최종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의미
- 반면 실업률은 소비, 가처분소득, GDP 및 최저임금 등 모든 변수와 부정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실업률 증가가 소비, 가처분소득, GDP, 최저임금을 낮추는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

<표 4-2> 전국 데이터 기초 통계량

기초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					
	$\Delta \log$ (consumption)	$\Delta \log$ (disp_income)	$\Delta \log$ (GDP)	$\Delta \log$ (minwage)	$\Delta \log$ (unemployment)
Mean	0.006497	0.008687	0.003108	0.020775	-0.002464
Median	0.007334	0.007975	0.003853	0.019564	0.000000
Maximum	0.035915	0.055134	0.022406	0.054039	0.154151
Minimum	-0.017071	-0.010158	-0.031208	-0.001433	-0.211309
Std. Dev.	0.007757	0.011442	0.009001	0.012472	0.057181
Skewness	0.366977	0.957406	-1.088652	0.542213	-0.660960
Kurtosis	5.373110	5.204064	5.513474	2.829172	5.209196
Jarque-Bera	19.02522	26.28359	34.09614	3.715919	20.43639
Probability	0.000074	0.000002	0.000000	0.155991	0.000037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Delta \log$ (consumption)	$\Delta \log$ (disp_income)	$\Delta \log$ (GDP)	$\Delta \log$ (minwage)	$\Delta \log$ (unemployment)
$\Delta \log$ (consumption)	1				
$\Delta \log$ (disp_income)	0.38	1			
$\Delta \log$ (GDP)	0.47	0.52	1		
$\Delta \log$ (minwage)	<b>0.09</b>	<b>0.03</b>	<b>0.24</b>	1	
$\Delta \log$ (unemployment)	<b>-0.25</b>	<b>-0.09</b>	<b>-0.28</b>	<b>-0.18</b>	1

- <그림 4-1>은 2000년 1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전국 레벨 및 차분 데이터의 시계열 특성을 나타내 주고 있음
- 좌측의 레벨 데이터를 보면 실업률을 제외한 소비, 가처분소득, GDP 및 최저임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기간 동안 소비와 GDP가 확연히 위축된 것을 볼 수 있으며 가처분 소득의 경우 큰 낙폭 없이 유지 또는 소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실업률의 경우 2000년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2000년과 2009년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8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이 확인됨
- 우측의 차분데이터(증가율) 변화에서는 레벨 데이터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비와 GDP가 2009년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실업률 역시 전년대비 변화가 2009년과 2010년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됨

<그림 4-1> 전국 레벨 및 차분 데이터의 시계열 특성



## 2. 수원시 데이터

- 수원시 데이터는 데이터 확보의 한계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수원시 지역총생산 (GRDP), 최저임금, 수원시 실업률, 수원시 사업체 종사자 수의 연간 데이터를 활용함
- 수원시 GRDP는 CPI로 실질화해 이용함
- 수원시 실업률 데이터의 경우 2008년 이후 데이터만 공개되어 있어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수원시 실업률을 활용하였고, 2000년부터 2008년 이전 데이터는 경기도 실업률 데이터를 조정해 대리변수로 활용함
- 데이터 조정은 2008년 이후 10년간 수원시와 경기도 실업률 차이의 평균인 -0.4%p를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실업률 데이터에 적용해 수원시 데이터로 치환해 활용하였음
- 단위근 검정 결과 GRDP와 수원시 실업률 2개 변수에서 단위근이 확인되었으며 변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변수를 로그차분해 활용함

〈표 4-3〉 수원시 데이터 단위근 검정 결과

H0	t-Statistic	Prob.
LNGRDP has a unit root	-2.369268	0.1656
LNMINWAGE has a unit root	-4.283593	0.0050*
LNUNEMPL has a unit root	-0.419714	0.8785
LNWORKERS has a unit root	-3.241009	0.0363*

- 〈표 4-4〉는 로그 차분한 각 변수의 평균, 중간값,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및 3차, 4차승으로 나타나는 대칭도와 첨도, Jaque-Bera 정규성 테스트 결과 및 변수간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음
- 상관계수는 전국 데이터와 다소 다른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경우 GRDP에 부정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원시 지역 GRDP가 하락한다는 의미
  - 전국데이터의 경우 GDP와 양(+)의 관계를 보임
- 수원시 실업률은 전국 데이터에서와 마찬가지로 GRDP, 최저임금, 종사자 수 모든 변수들과 부정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
  - 수원시 실업률 증가는 지역 GRDP, 최저임금, 수원시 종사자 수를 모두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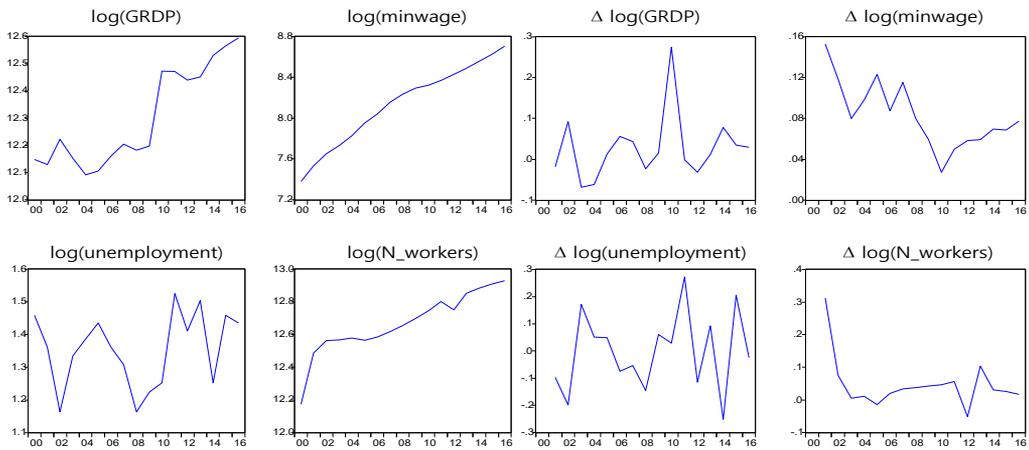
〈표 4-4〉 수원시 데이터 기초 통계량

기초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				
	$\Delta \log$ (GRDP)	$\Delta \log$ (minwage)	$\Delta \log$ (Unemployment)	$\Delta \log$ (N_workers)
Mean	0.027998	0.082921	-0.001471	0.047119
Median	0.014548	0.078800	0.002729	0.032532
Maximum	0.275195	0.153257	0.273293	0.312947
Minimum	-0.068716	0.027129	-0.251314	-0.051501
Std. Dev.	0.079981	0.032204	0.145995	0.079084
Skewness	1.807611	0.500558	0.159989	2.451709
Kurtosis	6.835743	2.775191	2.294010	9.306275
Jarque-Bera	18.52184	0.701849	0.400538	42.54175
Probability	0.000095	0.704037	0.818510	0.000000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Delta \log$ (GRDP)	$\Delta \log$ (minwage)	$\Delta \log$ (Unemployment)	$\Delta \log$ (N_workers)
$\Delta \log$ (GRDP)	1			
$\Delta \log$ (minwage)	-0.35	1		
$\Delta \log$ (Unemployment)	-0.19	-0.35	1	
$\Delta \log$ (N_workers)	0.01	0.47	-0.12	1

- 〈그림 4-2〉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수원시 레벨 및 차분 데이터의 시계열 특성을 나타내 주고 있음
- 좌측 레벨 데이터를 보면 수원시 실업률을 제외한 GRDP, 최저임금, 취업자 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수원시의 경우 2009년 금융위기기간의 영향이 전국 데이터 대비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자 수의 경우 전반적인 증가세 대비 2013년 일시적으로 급감한 이력이 확인됨
- 특히 수원시 GRDP의 경우 2009년 눈에 띄게 급증한 후 일시적인 감소는 있었으나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증가하고 있음
- 이는 2009년 금융위기의 영향이 수원시 지역경제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타 지역으로부터의 긍정적 요인을 흡수한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이 시기에 정책적인 지원 혹은 변화로 인해 수원시 경제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하였음을 나타내 주고 있음

- 수원시는 2009년 다른 지역 대비 글로벌 금융위기의 악영향을 받기보다 오히려 경제가 성장할만한 외부 유인이 있거나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 시기에 인구유입 증가, 삼성 등 제조업 성장, 서비스업 증대 등 다른 지역과 달리 특수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짐: 정책변화, 제도변화 등 포함
- 우측의 차분데이터에서도 수원시 GRDP 변화가 레벨 데이터에서와 마찬가지로 2009년 높은 변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해부터 변화분 자체가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음

〈그림 4-2〉 수원시 레벨 및 차분 데이터 시계열 특성



## 제2절 실증분석 모형

### 1. 구조적 VAR(SVAR) 모형

#### 1) SVAR 모형의 장점

- SVAR 모형은 모든 변수들의 자기 과거정보를 활용하는 자기 회기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과거 관측치가 설명변수로 포함됨
- 또한 다변량 벡터모형으로 자신과 다른 변수들의 현재 관측치를 내생변수로 활용하게 됨
- 즉 변수들간의 영향과 과거변수의 영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모형임
- 특히 일반 VAR모형과 달리 SVAR(Structural Vector Auto Regression) 모형의 경우 제약부가를 통해 변수간의 관계설정이 가능해짐
  - zero(0)제약(장·단기 제약), 부호제약(+/-) 등의 제약 부가 가능함
  - 제약을 통해 이론적 관계를 모형에 설정하게 됨으로써 단순 VAR대비 추정이 더욱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SVAR 모형은 자기상관식에서 유도된 오차항을 경제이론에 기반해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예상외의 충격에 대한ダイ나미한 반응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모형임
- 또한 변수간 상관관계뿐 아니라 충격반응 분석을 통해 한 변수의 변화가 각각의 다른 내생변수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예측오차분산분해(FEVD)를 통해 개별변수들이 한 변수의 변화에 기여한 상대적 크기를 확인할 수 있음
- Gottschalk(2001), Keating(2012) 등 일부연구는 SVAR 모형의 제한성(drawbacks) 및 한계(limitations)를 지적하고 있기도 하나 SVAR모형은 이론에 적합한 제약을 연구자 스스로 구성하고, 결과가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장점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임(Yang et al. 2018)
- 시차길이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 등은 최적 시차 추정을 통해 해소하는 등 추정의 단점을 보완하는 절차 진행으로 결과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음

## 2) SVAR 모형 구조

- SVAR 모형은 많은 거시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중 Yang et al.(2018)에서 이용한 모형을 활용해 구조를 설명하고자 함
- 먼저 모형을 단순 2변수 동태연립방정식의 형태를 가정할 경우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Structural VAR형태로 표현할 수 있음

$$B_0X_t = C_0 + B_1X_{t-1} + \varepsilon_t \quad (1)$$

- 이때  $E[\varepsilon_t \varepsilon_t^T] = d$ 이며  $d$ 는  $\sigma_1^2, \sigma_2^2$  로 구성된 대각행렬임. 위 식을 시차연산자( $L$ )을 이용해 표현하면

$$(B_0 - B_1L)X_t = C_0 + \varepsilon_t \quad (2)$$

$$B(L)X_t = C_0 + \varepsilon_t \quad (3)$$

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다시 단순 VAR형태로 표현하면

$$\begin{aligned} X_t &= B_0^{-1}C_0 + B_0^{-1}B_1X_{t-1} + B_0^{-1}\varepsilon_t = A_0 + A_1X_{t-1} + U_t \\ (I - A_1L)X_t &= A_0 + U_t \end{aligned} \quad (4)$$

로 표현할 수 있고, MA(Moving Average) 형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X_t = \mu + \Psi(L)U_t \quad (5)$$

- 이때  $\mu = (I - A_1L)^{-1}A_0$ ,  $\Psi(L) = (I - A_1L)^{-1} = \sum_{k=0}^{\infty} \Psi_k L^k$ ,  $\Psi_0 = I$ ,  $\Psi_k = A_k$ ,  $U_t = B_0^{-1}\varepsilon_t$ , 그리고  $E[U_t U_t^T] = B_0^{-1}E[\varepsilon_t \varepsilon_t^T](B_0^{-1})^T = B_0^{-1}d(B_0^{-1})^T$  임

- 이를 구조적 MA 폼으로 표현하면

$$X_t = \mu + \Psi(L)B_0^{-1}\varepsilon_t = \mu + D(L)\varepsilon_t \quad (6)$$

여기서  $D(L) = \sum_{k=0}^{\infty} D_k L^k = \Psi(L)B_0^{-1} = A_1B_0^{-1}$ ,  $\varepsilon_t$ 는 구조적 충격( $B_0U_t$ ),  $D_k$  행렬은 개별 구조적 충격에 대한 각각의 동태적 충격반응을 나타냄

- 따라서 SVAR 모형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인  $B_0$  만을 가지고도  $D(L)$ 과 구조적 충격인  $\varepsilon_t$  추정이 가능하게 됨
  - 현재 정보를 활용해 2기, 3기 등 추계 가능
-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충격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기제약을 부과함
- 즉 구조적 제약(장기제약)은  $X_t$ 를 안정적인 벡터형 공분산 매트릭스라고 가정할 경우  $\lim_{s \rightarrow \infty} (D_{ij}^s) = 0, i, j = 1, 2$  (2변수 모형 가정시)에서 장기제약  $D(1) = 0$ 을 부가함으로써 구조적 충격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음(중립적)을 의미하게 됨
  - 장기제약이 부가되지 않은 변수들에서 단기충격에서부터 장기까지의 누적 충격반응을 동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2. 공적분(cointegration) 검정

- 시계열 분석은 변수들이 시간흐름에 따라 안정적인 시계열을 갖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앞의 단위근 검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시계열 변수들은 단위근을 가지고 있으며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sup>12)</sup> 문제를 보이는 불안정한 시계열 자료인 경우가 많음
- 특히 이러한 단위근을 가지는 2개 이상의 변수가 확률적 추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선형 결합 과정에서 확률적 추세가 제거되어 단위근이 없는 결합변수가 생성되게 됨
- 따라서 불안정한 변수임에도 변수간 회귀성이 나타나 의미 있는 상관성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가 있다고 정의함
- 공적분관계가 있다는 것은 실제 상관관계와 별개로 변수간 균형관계(장기 상관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해 더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있음
  - VECM은 단기 조정과정을 통해 장기 균형관계에서 이탈하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수정하는 모형임
- 본 연구에서는 변수간 장기균형관계 확인과 모형설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Johansen (1988) 방식에 따라 공적분 검정을 수행함

12) 가성회귀란 변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실제 상관관계가 없는 변수들 간에 가성의 회귀관계가 생성되는 것을 말함. 불안정한 변수의 표본 수가 증가할 때 종종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계열 분석시 변수의 안정성을 검정해야하는 이유임

## 1) 전국 데이터

- 전국 데이터의 경우 모든 변수간 0개의 공적분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SVAR 수행 적정성을 확보함
  - 공적분 검정결과 5% 유의수준 하에서 Trace-statistics, Maximum-Eigen value값 모두 공적분 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함
  - 공적분 관계가 없는 모두 안정적인 변수들이란 의미로 이후 로그차분한 각각의 데이터를 활용해 SVAR을 수행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

〈표 4-5〉 전국 데이터 공적분 검정결과

Unrestricted Cointegration Rank Test (Trace)				
Hypothesized No. of CE(s)	Eigenvalue	Trace Statistic	0.05 Critical Value	Prob.**
None	0.257544	46.46013	69.81889	0.7809
At most 1	0.136577	24.72135	47.85613	0.9259
At most 2	0.122845	14.00122	29.79707	0.8406
At most 3	0.057620	4.432961	15.49471	0.8657
At most 4	0.001378	0.100670	3.841466	0.7510
Unrestricted Cointegration Rank Test (Maximum Eigen value)				
Hypothesized No. of CE(s)	Eigenvalue	Max-Eigen Statistic	0.05 Critical Value	Prob.**
None	0.257544	21.73879	33.87687	0.6278
At most 1	0.136577	10.72013	27.58434	0.9721
At most 2	0.122845	9.568256	21.13162	0.7841
At most 3	0.057620	4.332290	14.26460	0.8227
At most 4	0.001378	0.100670	3.841466	0.7510

## 2) 수원시 데이터

- 수원시 데이터의 공적분 검정결과 Trace-statistics, Maximum-Eigen value값 모두 5% 유의수준 하에서 각각 1개의 장기 상관관계(공적분관계)가 확인됨
- 이 경우 VECM 추정 방법이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나 샘플 수가 많지 않아 전국 데이터와 동일하게 SVAR 분석을 수행함
  - VECM의 경우 추가적인 차분작업으로 데이터의 유실이 발생하게 되며 수원시 데이터의 경우 표본 수가 많지 않아 부득이 SVAR분석을 진행함
  - 이에 따른 신뢰성 문제는 유의성 검증을 통해 회귀결과의 적정성 및 가성회귀 문제를 보완함

〈표 4-6〉 수원시 데이터 공적분 검정결과

Unrestricted Cointegration Rank Test (Trace)				
Hypothesized No. of CE(s)	Eigenvalue	Trace Statistic	0.05 Critical Value	Prob.**
None *	0.900220	59.29228	47.85613	0.0030
At most 1	0.631851	24.72047	29.79707	0.1717
At most 2	0.475742	9.731472	15.49471	0.3020
At most 3	0.002990	0.044915	3.841466	0.8321
Unrestricted Cointegration Rank Test (Maximum Eigen value)				
Hypothesized No. of CE(s)	Eigenvalue	Max-Eigen Statistic	0.05 Critical Value	Prob.**
None *	0.900220	34.57181	27.58434	0.0054
At most 1	0.631851	14.98900	21.13162	0.2897
At most 2	0.475742	9.686556	14.26460	0.2333
At most 3	0.002990	0.044915	3.841466	0.8321

### 3. 변수 순서(ordering) 및 장기제약

#### 1) 변수순서(ordering)

- VAR 모형의 경우 변수의 순서에 따라 상호간의 미치는 상관관계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SVAR모형의 경우 제약 추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각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변수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함
  - 전국 변수의 경우: 최저임금 변화율, 실업률 변화율, 소비 변화율, 가처분소득 변화율, GDP 변화율 순으로 순서를 부가
  - 수원시 변수의 경우: 최저임금 변화율, 실업률 변화율, 종사자수 변화율, GRDP 변화율 순으로 순서를 부가

#### 2) 장기제약

##### (1) 전국 데이터

- 전국 데이터의 SVAR 제약은 상방삼각 장기 0제약을 부가함
  - 장기적으로 영향이 중립적인 0으로 수렴함을 의미

- 즉 최저임금변수에 대해  $d_{12}=d_{13}=d_{14}=d_{15}=0$  제약을 부가하였으며 그 의미는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은 실업률, 소비, 가처분소득, GDP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른 변수들로부터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중립적(장기=0)이라는 것을 뜻함
  - 최저임금 변화는 정책에 의해 외생적으로 주어지므로 각 변수들은 최저임금변화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함
- 실업률 변화의 경우 장기적으로 소비, 가처분소득 GDP변화에 영향을 주며 최저임금 변화의 영향만을 받는다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장기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약이 부가됨( $d_{23}=d_{24}=d_{25}=0$ )
- 소비 변화는 가처분소득과 GDP 변화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며 최저임금 변화, 실업률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제약을 부가함( $d_{34}=d_{35}=0$ )
- 가처분소득의 경우 GDP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실업률, 소비 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 $d_{45}=0$ )
- 마지막으로 GDP는 장기적으로 모든 변수 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을 가정함

$$\lim_{s \rightarrow \infty} \begin{pmatrix} \Delta \text{최저임금}_{t+s} \\ \Delta \text{실업률}_{t+s} \\ \Delta \text{소비}_{t+s} \\ \Delta \text{가처분소득}_{t+s} \\ \Delta \text{GDP}_{t+s} \end{pmatrix} = D\varepsilon_t = \begin{pmatrix} d_{11} & 0 & 0 & 0 & 0 \\ d_{21} & d_{22} & 0 & 0 & 0 \\ d_{31} & d_{32} & d_{33} & 0 & 0 \\ d_{41} & d_{42} & d_{43} & d_{44} & 0 \\ d_{51} & d_{52} & d_{53} & d_{54} & d_{55} \end{pmatrix} \begin{pmatrix} \varepsilon_t^m \\ \varepsilon_t^u \\ \varepsilon_t^c \\ \varepsilon_t^d \\ \varepsilon_t^s \end{pmatrix} \quad (7)$$

## (2) 수원시 데이터

- 수원시 데이터의 SVAR 제약은 전국과 동일하게 상방삼각 장기 0제약을 부가함
- 즉 최저임금 변수에  $d_{12}=d_{13}=d_{14}=0$  제약을 부가하였으며 그 의미는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변화는 수원시 실업률과 종사자 수, GRDP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른 변수들로부터 장기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 전국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변화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
- 수원시 실업률의 경우 종사자 수와 GRDP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변화의 영향만을 받는다는 것을 가정함( $d_{23}=d_{24}=0$ )
- 수원시 종사자 수는 장기적으로 GRDP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수원시 실업률, 수원시 종사자 수 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을 가정함( $d_{34}=0$ )
- 마지막으로 수원시 GRDP는 최저임금과 수원시 실업률, 수원시 종사자 수 변화의 영향을 장·단기 적으로 모두 받는 것을 가정함

$$\lim_{s \rightarrow \infty} \begin{pmatrix} \Delta \text{최저임금}_{t+s} \\ \Delta \text{실업률}_{t+s} \\ \Delta \text{종사자수}_{t+s} \\ \Delta \text{GRDP}_{t+s} \end{pmatrix} = D\epsilon_t = \begin{pmatrix} d_{11} & 0 & 0 & 0 \\ d_{21} & d_{22} & 0 & 0 \\ d_{31} & d_{32} & d_{33} & 0 \\ d_{41} & d_{42} & d_{43} & d_{44} \end{pmatrix} \begin{pmatrix} \epsilon_t^m \\ \epsilon_t^u \\ \epsilon_t^c \\ \epsilon_t^d \end{pmatrix} \quad (8)$$

#### 4. 최적시차선택(lag selection)

- 최적시차 산출을 위해 Sims(1980)이 제안한 Sequential modified LR test 기준을 적용함: 5% 유의수준 적용
- 분석결과 전국 데이터의 경우 6차 시차가 최적시차로 확인 됨
- 총 74개 분기 데이터 변수의 시차조정 이후 최종적으로 68개 데이터가 활용됨
- 수원시 데이터의 경우 2차 시차가 최적시차로 확인됨
- 총 16개 연간 데이터 변수의 시차조정 이후 최종적으로 14개 데이터가 활용됨

〈표 4-7〉 전국 및 수원시 데이터 최적시차 선택

전국데이터					
Lag	LR	FPE	AIC	SC	HQ
0	NA	8.31e-20	-29.74505	-29.57917*	-29.67950*
1	54.84910	7.12e-20	-29.90163	-28.90633	-29.50834
2	32.30948	8.56e-20	-29.73149	-27.90678	-29.01046
3	24.86145	1.15e-19	-29.47115	-26.81702	-28.42238
4	57.08917	7.35e-20	-29.98222	-26.49868	-28.60571
5	47.54008	5.34e-20	-30.41315	-26.10019	-28.70889
6	<b>38.81367*</b>	<b>4.47e-20</b>	<b>-30.76453</b>	<b>-25.62216</b>	<b>-28.73254</b>
7	34.01720	4.00e-20*	-31.14086	-25.16908	-28.78113
8	26.17769	4.44e-20	-31.43040*	-24.62920	-28.74292
수원시 데이터					
Lag	LR	FPE	AIC	SC	HQ
0	NA	1.29e-10	-11.42058	-11.24675	-11.45631
1	20.84511	1.32e-10	-11.56468	-10.69553	-11.74333
2	<b>28.72303*</b>	<b>3.58e-12*</b>	<b>-16.28390</b>	<b>-14.71943</b>	<b>-16.60547</b>
3	0.000000	NA	-265.6257*	-263.3659*	-266.0901*

LR: sequential modified LR test statistic (each test at 5% level)

FPE: Final prediction error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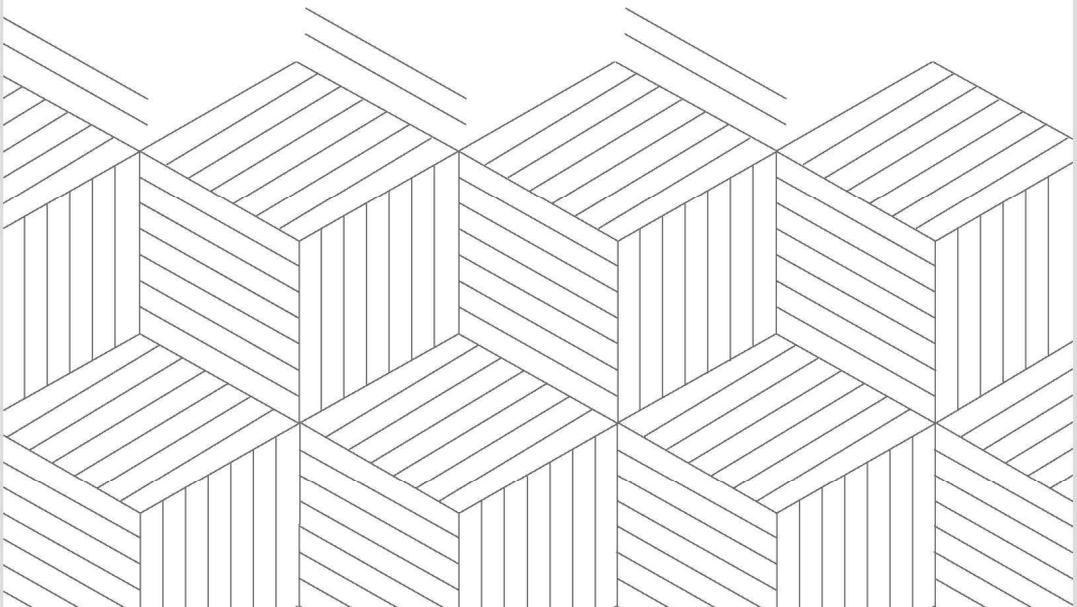
SC: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HQ: Hannan-Quinn information criterion



# 제5장 실증분석 결과

제1절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2절 수원시 고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제5장 실증분석 결과

### 제1절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SVAR 추정에 있어 부호 지정은 모든 구조적 충격이 positive sign임을 가정하였고, 잔차항을 시작점으로 적용함
  - 즉, 모든 충격이 (+)의 방향으로 나타남을 가정함,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감소의 경우는 negative sign 가정), 실업률 증가 등
- 잔차항의 serial correlation은 LM-test 결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1. 상관계수 분석

- 상관계수 결과값은 상관관계와 유의성 검증 확인을 위해 활용하고 이후에 살펴볼 충격 반응분석을 통해 장·단기 동태적 영향을 고찰하고자 함
- 먼저 <표 5-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SVAR 추정 결과 전국 데이터의 결과값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됨
-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률을 포함해 가처분소득, GDP 및 최종소비 모든 변수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실업률을 높인다는 결과로 최근 국내 고용지표의 움직임과 동일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음
- 가처분소득과 GDP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최근 많은 논쟁과 우려의 쟁점이 되어 왔던 실질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적인 의견과는 상반되는 결과임
  - 가처분소득은 세금납부 등 의무 지출을 제외하고 소비 가능한 실질적인 소득을 의미 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됨
- 실업률 증가는 비제약 변수인 가처분소득, GDP, 최종소비 모두에 음(-)의 영향이 확인됨
  - 경제이론과 많은 실증분석에서 나타나는 실업률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한국 데이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음

- 가처분소득은 GDP와 최종소비에 모두 긍정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마찬가지로 GDP 증가는 최종소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표 5-1〉 전국 데이터 SVAR 상관계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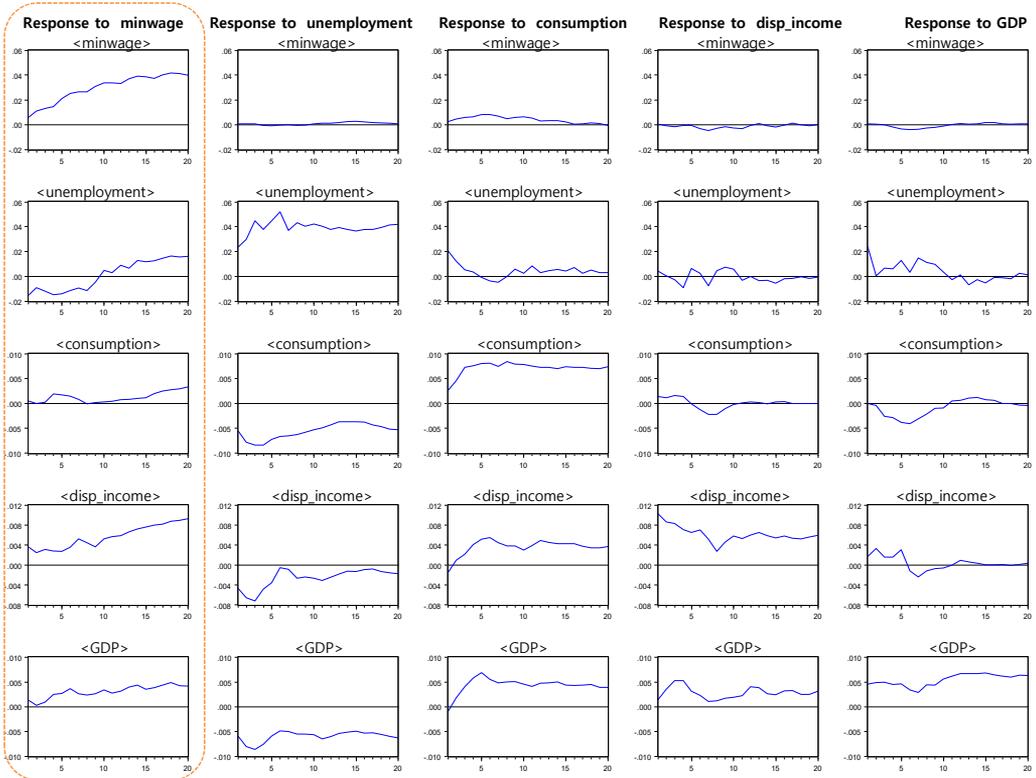
Type of shokcs		Coefficient	Std. Error	z-Statistic	Prob.
Minwage	To minwage	0.038233	0.003278	11.66190	0.0000
	To unemployment	0.019555	0.005232	3.737466	0.0002
	To disposable income	0.003030	0.001075	2.819508	0.0048
	To GDP	0.009951	0.001194	8.336253	0.0000
Unemployment	To consumption	0.003532	0.001278	2.763435	0.0057
	To unemployment	0.040870	0.003505	11.66190	0.0000
	To disposable income	-0.005099	0.000947	-5.386206	0.0000
	To GDP	-0.001768	0.000821	-2.153319	0.0313
Disposable income	To consumption	-0.006160	0.001124	-5.480704	0.0000
	To disposable income	0.006925	0.000594	11.66190	0.0000
	To GDP	0.003053	0.000763	4.001117	0.0001
GDP	To consumption	0.004252	0.000923	4.608968	0.0000
	To GDP	0.005911	0.000507	11.66190	0.0000
Consumption	To consumption	0.002923	0.000810	3.610896	0.0003
	To consumption	0.006348	0.000544	11.66190	0.0000

## 2. 충격반응 분석

- 충격반응 분석은 각각의 구조적 충격에 대한 변수별 장기반응의 누적결과를 20기(20분기)를 기준으로 살펴봄
- 첫 번째 칼럼이 최저임금 인상이 각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측방향으로 각각 실업률 증가, 최종소비 증가, 가처분소득 증가, GDP 증가의 영향을 칼럼별로 확인할 수 있음
- 먼저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충격 초기에는 실업률이 하락해 8분기(2년)까지 하락세가 유지되나 9번째 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됨
  - 상관계수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은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높이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 최종소비는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는 영향이 크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최저임금인상이 장기적으로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가처분 소득과 GDP 모두에 단기를 비롯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국내 주요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높이는 악영향이 나타나는 반면 가처분소득, GDP, 소비는 늘리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다만 전국 실업률의 경우 약 2년까지는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됨
- 나머지 변수들의 충격반응함수 중 실업률 증가의 경우 전주기적으로 최종소비와 가처분 소득, GDP를 떨어트리는 부정적인 음(-)의 영향이 확인됨
  - 이는 전국 데이터가 일반적인 완전경쟁시장 경제이론과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음의 의미: 두 번째 칼럼 참조
- 최종소비 증가 충격의 경우 충격초기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나 바로 증가 추이로 전환되어 장기적으로 양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음: 세 번째 칼럼 참조
  - 최종소비 증가는 장기적으로 GDP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가처분소득 증가는 GDP에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네 번째 칼럼 참조
- 마지막으로 GDP 증가의 영향은 다섯 번째 칼럼에서 확인되는데 각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으로 중립적임을 가정하고 있어 장기에는 0으로 수렴하는 영향을 보이고 있음
  - 단기 및 중기 영향을 보면 GDP 증가가 최저임금 변화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에 대한 영향은 초기 증가하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나 중기부터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장기적으로 음의 방향으로 하락 가능하나 장기 제약으로 인해 0으로 수렴
  - 가처분소득에 대한 영향은 초기 증가하는 영향을 보이다 5분기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2개 분기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영향이 확인됨

〈그림 5-1〉 전국데이터 누적 충격반응함수



### 3. 분산분해분석

- 분산분해분석(본 연구에서는 예측오차분산분해분석;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수행)은 VAR 모형 내에서 시간이 변함에 따라 각 변수의 변화에 미치는 상대 변수들의 영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냄
- 따라서 각 변수의 변동(분산)에 미치는 개별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방법임

#### 1) 최저임금 분산분해

- 최저임금은 정책에 의해 일시에 결정되는 자체적인 변화의 영향이 타 변수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초기 1분기에 8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 20분기(5년) 평균 72.9%의 비중을 차지함

- 단기 최저임금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최저임금 자체의 변화 외에 최종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분기 13.85%, 2분기 13.85% 등 20분기 평균 12.32%의 영향을 미침
- 장기로 갈수록 가처분소득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분기(5년)에는 최종소비 13.17% 보다 많은 13.53%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GDP 및 실업률은 장·단기 모두 최저임금 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최저임금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지 않음
  - GDP의 경우 4분기부터 5%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분기에 5.06%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실업률은 최저임금 변화에 5개 변수 기준 20분기 2.33% 정도의 영향만을 미침

## 2) 실업률 분산분해

- 실업률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GDP로 단·중·장기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
- 가장 크게는 2분기에 전체의 44.54%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며 20분기 평균 35%의 영향력을 보임
- 실업률 자체의 영향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실업률이 국내총생산(GDP)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그 외에 최종소비, 가처분소득, 최저임금 순으로 실업률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기로 갈수록 각 변수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이가 나타남
- 실업률 변화에 미치는 최저임금의 영향은 장·단기 모두 약 10%대 규모로 다른 변수들 대비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1분기에 12.65%의 영향을 주고 있으나 2분기 10.54%, 3분기 9.63%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분기에는 10.74%로 소폭 증가하는 등 20분기 평균 9.88%로 약 10%대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전국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10%대 안팎 규모로 초기 다소 높은 반응을 보이다 점차 영향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5개 주요변수 기준 영향 규모임

### 3) 가처분소득 분산분해

- 가처분소득의 변화는 의무지출 이후의 실질소득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변화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먼저 가처분소득 자체의 변화 이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업률로 1분기 15.2%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실업률의 영향은 1분기 이후 점차 증가해 중기인 6분기(2년반) 20%대의 최고점을 보이다 20분기 다소 감소한 18.95%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
- 실업률의 영향은 전반적으로 일정규모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20분기 평균 18.44% 규모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다음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는 GDP로 6분기부터 13%대로 증가해 유사한 수준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
- 가처분소득변화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은 타 변수 대비 낮은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1분기 8.97%에서 10분기 9.21%, 20분기 9.6%로 20기 평균 9%대의 영향을 주고 있음
- 따라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처분소득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전국 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향은 5개 변수 기준 9%대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20기 전반에 걸쳐 유사한 수준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조치가 가계의 실질소득인 가처분소득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정의하기 어려움
  - 또한 가처분소득 변화에 영향력이 큰 실업률의 변화에도 최저임금보다 GDP의 변동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의 실질소득인 가처분소득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은 되고 있지 않음

### 4) 최종소비 분산분해

-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최종소비 자체의 변화보다도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실업률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전국 소비자들은 실업상태에 따라 소비지출을 줄이거나 늘리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격 초기인 1기에 77.11%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됨
- 반면 최종소비 자체의 변화로 인한 영향은 1기 17.5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며 20분기 평균 약 24%대의 영향이 나타남

- 실업률의 경우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50%대의 영향력을 유지하며 20분기 평균 51.37%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GDP와 가처분소득의 요인도 3분기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GDP의 경우 20분기에 13.86%, 20분기 평균 10.73%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
  - 가처분소득의 경우 20분기 10.54%, 20분기 평균 8.68%의 영향력을 보임
- 가계 최종소비에 미치는 최저임금 변화(인상)의 영향은 1분기 0.66%로 가장 낮은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점차 증가해 4분기(1년)부터 5.44%로 증가한 후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20분기(5년) 7.23%, 20분기 평균 5.37% 규모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결론적으로 가계 최종소비지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실업률인 것으로 확인되며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종소비를 늘리거나 줄이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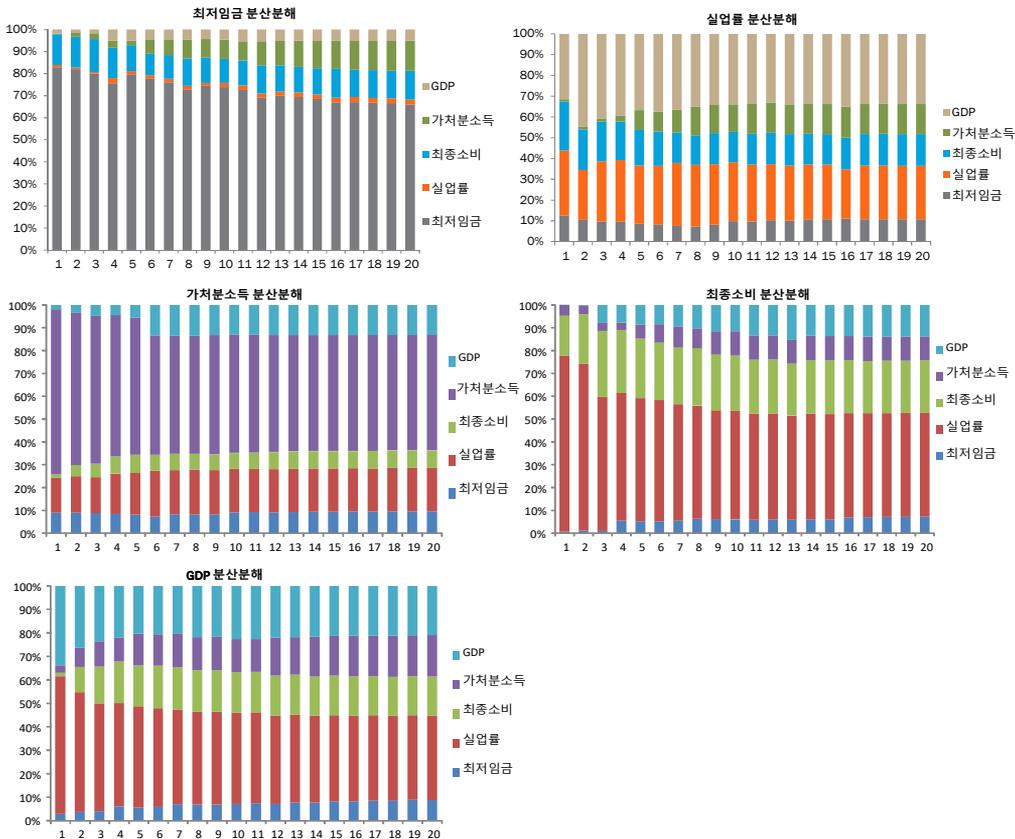
## 5) GDP 분산분해

- GDP 변화에 미치는 거시변수들의 영향은 가계 최종소비지출과 유사하게 GDP 자체의 변화보다 실업률의 변화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 1분기 GDP 자체의 영향력은 33.81% 규모임
- 실업률의 경우 GDP 변화에 1분기 58.68%로 전체의 약 60% 규모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실업률의 GDP 변화에 대한 영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일정 규모를 유지하며 20분기 평균 40.61%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음
- 최종소비지출과 가처분소득 역시 GDP 변화에 일정 규모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가처분소득의 초기 영향력은 3.09%에 그치나 점차 증가해 20분기에는 17.7%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분기 평균 14.20%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최종소비지출의 1분기 영향률 역시 1.53%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영향을 미치나 점차 규모가 증가해 장기적으로(20분기, 5년) 16.56%의 규모를 보이고, 20분기 평균 15.95%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
- 최저임금이 GDP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1분기 2.89%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게 확인됨
  - 최저임금의 영향력 역시 장기적으로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점진적인 증가폭을 보이고 있으며 20분기에 8.84%로 20분기 평균 6.87%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국내 GDP 변화의 단기 및 장기 요인으로 실업률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기로 갈수록 각 변수들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중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GDP 변화 요인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됨

## 6) 최저임금인상이 각 변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종합

- 국내 각 거시변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종합해 보면 다른 거시변수 즉 실업률, 가처분소득, 최종소비지출, GDP 대비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단 최저임금 변화 자체의 경우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변화라는 변수의 특성상 자체적인 변화요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다른 변수에 대한 영향력은 가장 작은 규모이나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기로 갈수록 소폭씩 증가하고 있음
- 그 외에는 실업률과 GDP가 자신의 변화 외에 각각의 거시변수 변화에 높은 비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며 가처분소득 및 최종소비지출의 변화 역시 낮은 규모이나 일정 규모로 거시변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전국 변수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을 급격히 변화시키거나, 가계의 실질 임금 하락, GDP 하락, 최종소비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그림 5-2〉 전국데이터 분산분해 분석



## 제2절 수원시 고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수원시 데이터는 제4장의 데이터 설명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최저임금, 수원시 실업률, 수원시 취업자 수, 수원시 GRDP의 연간 데이터를 활용함
- 또한 일부 부족한 데이터를 대리변수를 활용해 추정한 부분이 있어 결과해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
  -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수원시 실업률 데이터의 경우 경기도 실업률 데이터를 조정해 대리변수로 활용함, 이에 대한 세부 설명은 제4장에서 확인할 수 있음

### 1. 상관계수 분석

- 상관계수 분석결과 수원시 실업률 변화가 GRDP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변수의 상관성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됨
  - 수원시 실업률이 GRDP에 미치는 영향관련 결과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유의성 없음
- 수원시의 경우 전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을 포함해 모든 변수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원시 실업률이 하락하고, 기업이 고용자 수를 줄이며 결과적으로 지역 GRDP가 하락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함
- 특이점은 수원시 상관계수 결과가 전국데이터와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수원시 고용 및 경제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전국데이터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변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수원시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전국 실업률이 증가하는 결과와 상반되게 수원시 실업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수원시 GRDP가 하락하는 등 장·단기의 동태적 영향을 고찰해 볼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충격반응함수 분석 필요
- 수원시 실업률은 비제약 변수인 취업자 수와 부정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 GRDP와도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주목할 만한 결과로 수원시 취업자 수 증가가 지역 GRDP와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수원시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게 충격 반응 함수를 통해 장·단기 영향력을 동태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경제의 생산요소인 고용자 수 증가는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수원시의 경우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동태적 분석 및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임
- 또한 지역 노동력의 생산성 향상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표 5-2〉 수원시 SVAR 상관계수 분석

Type of shocks		Coefficient	Std. Error	z-Statistic	Prob.
Minwage	To Minwage	0.070195	0.013266	5.291503	0.0000
	To unemployment	-0.077775	0.020925	-3.716851	0.0002
	To N_workers	-0.022461	0.007637	-2.941058	0.0033
	To GRDP	-0.068541	0.017855	-3.838768	0.0001
unemployment	To unemployment	0.055727	0.010531	5.291503	0.0000
	To N_workers	-0.022696	0.004681	-4.848643	0.0000
	To GRDP	<b>-0.002373</b>	<b>0.012281</b>	<b>-0.193238</b>	<b>0.8468</b>
N_workers	To N_workers	0.007014	0.001326	5.291503	0.0000
	To GRDP	<b>-0.042583</b>	<b>0.009266</b>	<b>-4.595777</b>	<b>0.0000</b>
GRDP	To GRDP	0.017184	0.003247	5.291503	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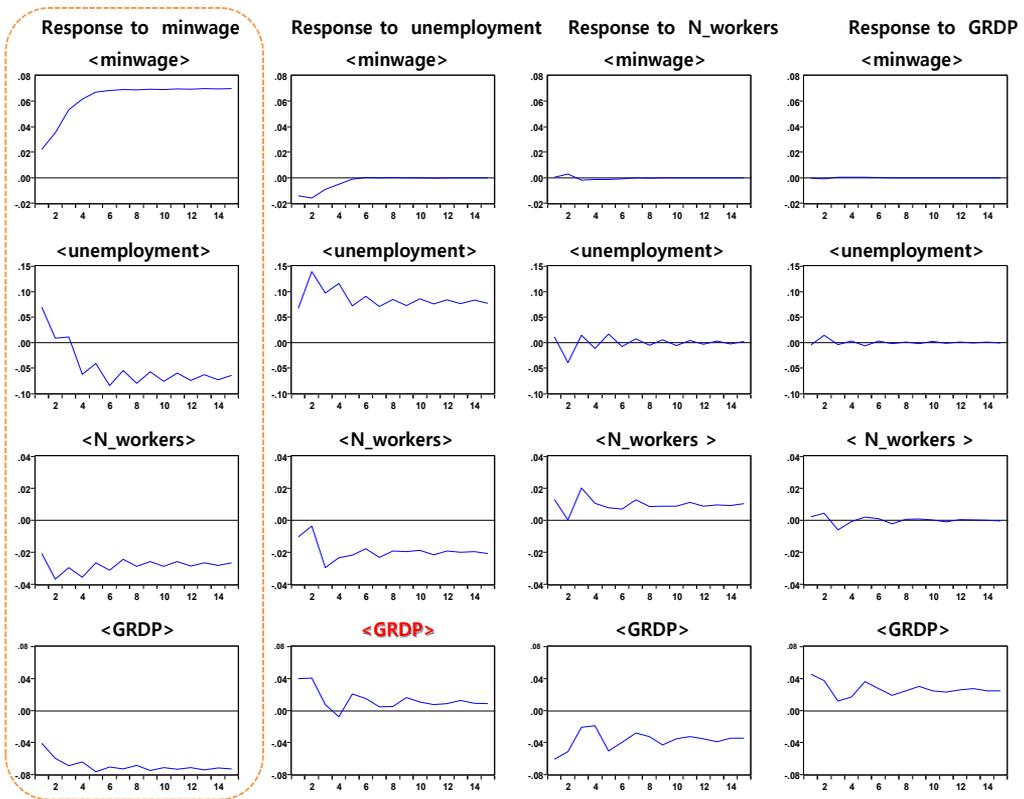
## 2. 충격반응분석

- 최저임금 인상이 수원시 고용 및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충격반응 영향은 첫 번째 칼럼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수원시의 경우 연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 1개 기간이 1년을 의미하며 최고 15년 까지의 영향을 장·단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먼저 수원시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초기 2년간 실업률은 높아지고 3차 년도 이후 부터 실업률이 낮아지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전국변수의 충격반응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 이후 국내 실업률이 증가하는 추이를 오히려 잘 반영해 주는 결과임
- 또한 최저임금 인상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수원시의 경우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 취업자 수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음(-)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즉, 수원시의 경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기간 동안 일을 한 취업자와 즉시 일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중 실업자 수를 의미하며 취업자 수는 조사기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일시휴직자, 또는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 수를 의미함
  
- 지역생산인 GRDP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전국 데이터와는 다른 지역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 GRDP는 단·중·장기 전 주기적으로 하락하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수원시 지역총생산에 시기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함
- 수원시는 제조업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 비중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영세상인 및 자영업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수원시 서비스업 비중은 전체의 94.4%, 제조업 비중 5.4%, 서비스업 종사자 수 비중은 89.5%, 제조업 종사자 수 비중 10.1%의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서비스업 비중과 서비스업 종사자 수 비중이 높은 자영업 중심 산업 구조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수원시 GRDP뿐 아니라 취업자 수에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전국단위 데이터와 상반되는 영향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상의 결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임
  
- 두 번째 칼럼은 수원시 실업률 증가가 수원시 고용 및 지역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 실업률 증가의 경우 단기적으로 최저임금을 낮추는 영향이 확인되고 있으며, 취업자 수 역시 단기를 비롯 장기적으로 낮아지는 음(-)의 영향이 확인됨
  - 수원시 실업률 증가가 최저임금과 수원시 취업자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
- 지역 GRDP는 충격 초기 증가하나 다시 하락하다 장기적으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상관계수 분석에서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수원시 실업률 증가가 지역 GRDP를 증가시킨다는 의미로 유의성이 없다는 분석결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

- 세 번째 칼럼은 수원시 고용자 수 변화에 대한 충격반응을 나타내고 있음
- 제약이 가해지지 않은 수원시 GRDP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수원시 고용자 수 증가가 전 주기적으로 GRDP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고용자 수 증가가 인력 증가분만큼 지역의 생산량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원시 고용의 질적 향상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초기 하락 후 상승세를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원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수원시 고용 생산성이 낮은 상태이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용의 질적 향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임

<그림 5-3> 수원시데이터 누적 충격반응 함수



### 3. 분산분해분석

#### 1) 최저임금 분산분해

- 수원시의 경우 전국적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 변화에 지역 변수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수원시 실업률의 경우만 최저임금 변화에 15년 평균 21% 규모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차 년도 이후 최저임금 변화에 종사자 수의 영향이 다소 증가하고는 있음: 15년 평균 1.76%
  - 수원시 GRDP는 장·단기 모두 최저임금 변화에 거의 영향이 없음: 15년 평균 0.17%
  - 전국 데이터의 경우 최저임금 자체의 변화 외에 최종소비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침
- 즉, 수원시의 경우 최저임금은 전국 데이터보다도 더 크게 외생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자체가 변수 변화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 수원시 실업률 분산분해

- 수원시 실업률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전국과 달리 최저임금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전국의 경우 GDP 변화가 실업률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단기(1년) 실업률 변화에 최저임금 변화가 51.74%로 실업률 자체 변화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며 장기까지 영향력이 50% 가까이 미침
  - 15년 평균 43%의 영향이 확인됨
- 종사자 수 역시 3차 년도부터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15년)적으로 19.22%, 15년 평균 18%의 영향력이 확인됨
- 수원시 지역 GRDP는 전국의 경우와 달리 수원시 실업률에 전반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 실업률 변화의 경우 GRDP 비중이 15년 평균 2.11%인 반면 전국 실업률 변화에 GDP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분기(5년) 평균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따라서 수원시 실업률 변화의 경우 최저임금의 영향이 가장 크게 확인되며 지역 GRDP의 영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3) 종사자 수 분산분해

- 수원시 종사자 수 변화에는 최저임금, 실업률, 종사자 수 자체의 변화가 유사한 비율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 GRDP는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보임
-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6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최저임금의 영향력은 3년차부터 30%대로 감소해 15년차에 32.7%, 15년 평균 35.57%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수 자체의 변화는 단기에 23.8%로 비중이 낮게 나타나나 점차 증가해 3년차부터 30%대의 비중을 보이며 15년 평균 30.38%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 실업률의 영향은 단기 14.8%대를 보이나 이 역시 3분기 이후 30%대로 증가해 15년 평균 29.25%의 비중을 차지함
- GRDP는 단기적으로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3분기부터 4.6%의 비중을 보이며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15년 평균 4.76%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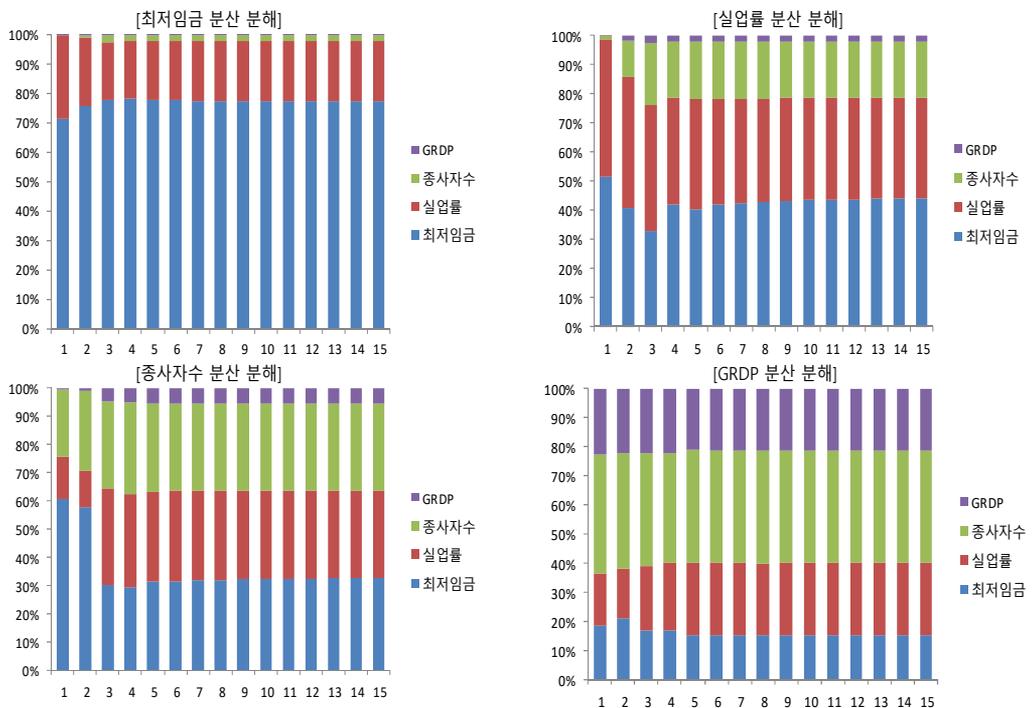
### 4) 수원시 GRDP 분산분해

- 수원시 GRDP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종사자 수의 변화로 확인됨
  - 종사자 수는 단기에 41.08%로 네 개 변수 중 가장 큰 비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15년 평균 38.78%의 영향을 보이고 있음
- 종사자 수 다음으로 실업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업률은 단기에 17.83%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해 15년차에는 25.14%, 15년 평균 23.68%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수원시 지역 GRDP는 자체적인 지역총생산 변화에 단기에 22.58%로 종사자 수 다음으로 높은 영향을 보이고 있으며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며 15년 평균 21.40%의 영향을 차지하고 있음
- 최저임금은 수원시 GRDP 변화에 단기에 18.5%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며 2기에 소폭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해 15%를 유지하고 있으며 15년 평균 16.06%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장기로 갈수록 수원시 지역총생산규모인 GRDP의 변화는 종사자 수의 변화를 중심으로 실업률, GRDP, 최저임금 순으로, 그러나 모든 변수가 일정규모를 차지하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5) 최저임금 인상이 수원시 지역변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종합

- 종합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 인상이 수원시 고용 및 지역경제 변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국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수원시 실업률과 종사자 수 변화 등 고용시장 변화에 최저임금이 다른 변수들 대비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지역 GRDP에는 평균적으로 16%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 역시 국가 GDP에 미치는 영향력(6.8%) 대비 약 3배 규모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한편 지역 GRDP에는 종사자 수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종사자 수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의 영향은 GRDP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최근 2년간 단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수원시 고용 및 지역경제 변화에 다른 변수들 대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수원시 지역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전국에서 확인된 낮은 영향력 대비 수원시의 경우 최저임금의 영향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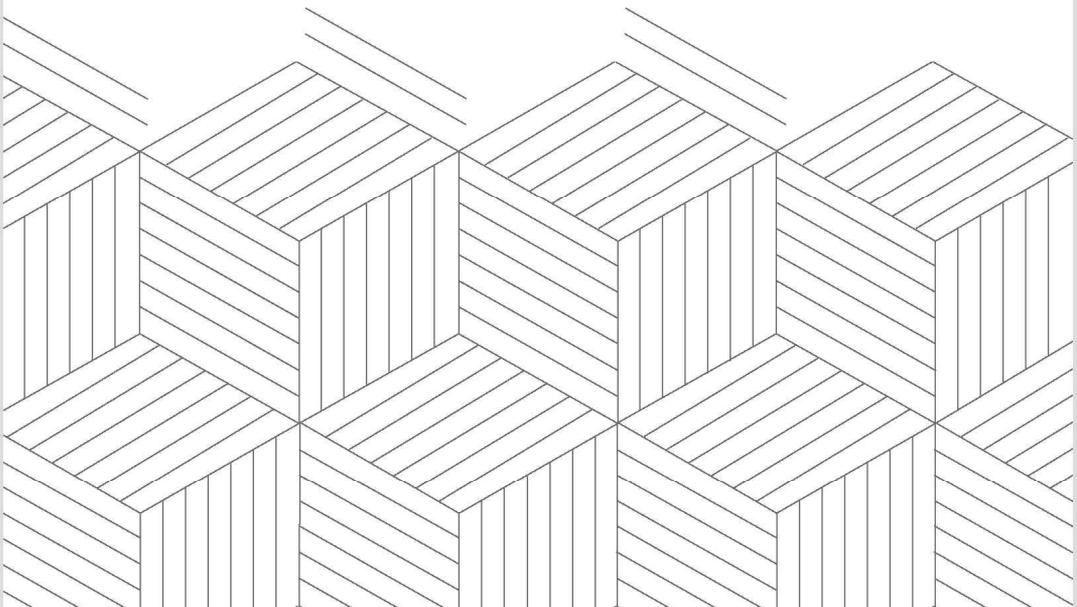
〈그림 5-4〉 수원시 데이터 분산분해 분석





# 제6장

## 결론 및 시사점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SVAR 분석 모형을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의 전국 및 수원시 고용,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연구결과 충격반응과 분산분해 분석에서 전국과 수원시의 영향이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먼저 충격반응 분석결과 전국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높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최종소비를 늘리고 가계의 실질소득인 가처분소득, 국가 GDP를 늘리는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됨
  - 단기 2년까지 실업률은 하락: 최근 국내 데이터와는 상반되는 결과임
- 수원시 데이터의 경우 수원시 실업률이 단기에는 증가하나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결과는 최근 실업률 증가세와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하락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수요 독점적 고용시장의 일반적인 반응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생산(GRDP)을 단·중·장기 전주기적으로 떨어트리고 종사자 수를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표 6-1〉 전국 및 수원시 충격반응결과 요약표

최저임금인상의 충격반응	전국	수원시
실업률(전국/수원시)	단기 하락(-), 장기 증가(+)	단기 증가(+), 장기 하락(-)
최종소비(전국)	증가(+)	
가처분소득(전국)	증가(+)	
GDP(전국)/GRDP(수원시)	증가(+)	하락(-)
종사자 수(수원시)		하락(-)

- 분산분해분석 결과 전국 데이터의 경우 각 거시변수에 미치는 최저임금의 영향은 다른 변수들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됨
- 반면 실업률의 영향이 국내 거시변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실업률이 올라갈 경우 최종소비, 가처분소득, GDP 등이 하락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
- 즉, 실업률을 낮추는 경제정책이 국내 거시경제 변수를 호전시키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 고용 및 경제정책의 경우 실업률 하락에 정책적 방향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함
- 한편 전국 실업률은 GDP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은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일자리 정책만이 아닌 근본적으로 국가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에서 출발해야 함
  - 피상적으로 일자리 수와 실업률 수치만 올리는 정책이 아닌 국가 생산성 증대에서 파생되는 일자리 증대 및 실업률 하락을 유도하는 방법이 정책의 효과를 견실하게 하고 국내 경제 기반을 다지는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음
-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노동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금리인하 등 다양한 통화 및 재정정책을 노동정책 및 기업 정책과 동시에 고민해 볼 필요 있음
  - 각각의 정책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책을 시행
- 최저임금 변화는 외생적인 정책결정으로 인한 최저임금 자체의 변화요인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최종소비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이는 최저임금 정책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나타내 주는 결과임
-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로 되어있음
- 이러한 구조는 빠른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나 여러 가지 사안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는 취약성 또한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일본 등과 같이 각 지역이 결정하고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 및 중앙의 사회적 자문기구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치는 방안
- 또는 현재와 동일한 체제에 중앙자문기구를 포함하는 영국과 같은 방안, 의회 승인 절차 추가 등 최저임금 변화의 영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수원과 같이 지역산업구조의 특색으로 인해 정책결정의 영향이 부정적으로 크게 나타나거나 예상하는 결과와 다른 방향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 지역 혹은 산업별 차등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기업 규모별, 지역별로 연도별 적응기간을 특례로 부여하는 등 특례조항 신설 등을 통해 최저임금 변화에 민감한 지역 및 산업이 갑작스러운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완충장치를 제공
  - 최저임금 감액 적용, 산업특성·기업규모별 최저임금 밴드 설정, 유예기간 부여 등 상황별 차등 적용 방안 마련
  - 지역별, 산업분류별 임금근로자 현황 파악, 지역별 산업체 수 현황파악 등을 통해 지역 실태, 산업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세분화된 최저임금 정책 마련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사업체 규모별, 의료보험 수령여부 등에 따라 목표임금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절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는 일부지역에만 별도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역간 격차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표 6-2〉 전국 및 수원시 분산분해결과 요약표

거시변수 요인 분석 (최저임금의 비중)	전국 (5변수 기준)	수원시 (4변수 기준)
최저임금	최종소비의 영향 가장 큼	수원시 실업률의 영향 가장 큼
실업률(전국/수원시)	최저임금의 영향 10%대, GDP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음	최저임금 영향 50%대로 가장 큼
최종소비(전국)	최저임금 영향 5%대, 실업률 영향이 가장 큼	
가처분소득(전국)	최저임금 영향 9%대(최소), 실업률 영향 최대	
GDP/GRDP	최저임금 영향 7%대로 최소, 실업률 영향 최대	최저임금의 영향 16%대, 영향 최소, 종사자 수의 영향 최대
종사자 수(수원시)		최저임금의 영향 가장 큼(단기 60.8%, 15년 평균 35.57%), GRDP 영향 최소

- 수원시의 경우는 전국과 달리 수원시 실업률과 종사자 수 변화에 최저임금 변화(인상)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전국대비 수원시가 최저임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임을 의미

- 수원시 지역 GRDP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종사자 수로 확인되는데 종사자 수 역시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어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 실업률을 비롯, 종사자 수, GRDP 변화에 최저임금 인상(변화)이 주요한 충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는 충격반응함수의 영향에서 확인된 것처럼 영세 자영업이 많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수원시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수원시는 서비스업 비중이 전체의 94.4%, 제조업 5.4%, 서비스업 종사자수 비중은 89.5%, 제조업 종사자 수 비중 10.1%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전국 데이터 결과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원시의 경우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및 지역 특색이 전국대비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보완할 수 있는 중앙 단위의 최저임금 정책이 필요함: 지역별 산업별 차등화 적용, 규모별 밴드설정, 지역자문 기구 창설 등
  
- 수원시 차원에서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나치게 편중된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서비스업 중심 구조는 제조업 변화에 따른 경제 충격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대외적 불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 있는 반면: 불황의 영향을 당연히 받으나 제조업 대비 상대적으로 충격의 영향이 적게,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
- 서비스업 구조에 취약한 정책변화에 민감하고, 견고한 성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역 산업의 종류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수원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고민이 필요함
  - 상관관계수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수원시는 취업자 수 증가와 GRDP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등 수원시의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전국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산업을 보호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원시 지역 임금결정위원회 창설, 지역 자문단 신설 등을 시 자체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역 임금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문역할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산업, 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제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또한 지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병행될 때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지역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 참고문헌 |

## 〈학술 자료〉

- 강승복(2015),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 김강식(2017), 최저임금 결정 구조 · 개편, 최저임금위원회
- 김명중(2006), 일본의 최저임금제도,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06년 8월(Vol.4, No.8)
- 김유선(2018), 최저임금 고용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남성일(2008),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 노동경제 논집, 제31권 제3호, pp.1-19
- 노동부(2009), 근로빈곤 대책연구.1, 한국노동연구원
- 안태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경제학적 논쟁,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09년 8월호, pp43-54
- 양은순(2019), 수원 산업단지 발전 방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오학수(2019), 일본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한국노동연구원
- 외교부(2017), [독일]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 양자경제외교총괄과
- 유영성(2018),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경기연구원
- 윤상호(2018), 최저임금과 자동화: 최저임금이 자동화를 통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 이병희(2009), 최저임금의 고용유지 및 취업유입 효과, 산업노동연구
- 이시균(2007),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노동리뷰, 6월호, pp.43-51
- 이재훈(2018), 미국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 효과, 민주노동 정책연구원&사회공공연구원 정책보고서
- 정원일(2017), 최저임금의 소비진작과 물가자극 효과,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조경엽(2018),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 주현·김숙경·김중호(2013), 개인기업의 실태 및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 최저임금위원회(2018),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_\_\_\_\_ (2019),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Gottschalk(2001), An Introduction into the SVAR Methodology: Identification, Interpretation and Limitations of SVAR models, Kiel working paper No 1072
- Keating, J.W. (1992), Structural Approaches to Vector Autoregressions.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74 (5): 37-57
- Sims, C.A., (1980). Macroeconomics and reality. Econometrica 48: 1-48.
- Johansen, S., (1988). Statistical analysis of cointegration vectors.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12: 231-254.

Yang, E., Kim, S. H., Kim, M. H., & Ryu, D. (2018). Macroeconomic shocks and stock market returns: The case of Korea. Applied Economics, 50(7), 757-773

#### 〈기관 홈페이지 및 인터넷 사이트〉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408>,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thebalance.com/>

<https://tradingeconomics.com/>

#### 〈통계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년 원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각호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Low Pay Commission (2019)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s://www.bls.gov/>)

#### 〈언론보도〉

김준영, 최저임금 인상→임금격차 완화... '불평등 개선' 효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61278&pageIndex=1#contributePolicy>

성수영,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종업원 있는' 자영업 4개월 연속 감소세,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1017531>

송고시간, '노동자 천국' 호주의 고민... "법정임금 부담 과해"

<https://www.yna.co.kr/view/AKR20171209036400030>

이승훈, 최저임금 인상, 한인에게는 '남의 일'..?, 한호일보

<http://www.hanh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56769>

이정식,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타당한가, 한국경제 좋은일터연구소

[http://gwp.hankyung.com/apps/gwp.columnsndebates\\_view?no=14](http://gwp.hankyung.com/apps/gwp.columnsndebates_view?no=14)

정은주, 독일 최저임금 도입 3년...정규직 늘고 임금격차 줄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2813.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2813.html)

정은주·방준호, 하위 20% 가구소득 18% 급감...분배 개선 노력에도 더 커진 소득격차,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3134.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3134.html)

# Abstract



## The effect of Raising Minimum Wage Rate on Employment and Local Economy: the case of Korea and Suwon city

-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raising minimum wage on national and Suwon employment and the (regional) economy through SVAR methodology.
  - It performs SVAR with variables such as minimum wage, GDP and Suwon GRDP, national and Suwon unemployment rates, employment (number of workers in Suwon), final consumption, and disposable income to analyze mid- and long-term effects and impact factors.
- Results show that the impacts of national and Suwon are in different directions in terms of impulse response and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FEVD).
- First,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shows that raising the minimum wage in the country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unemployment rate in the long run, while it increases the final consumption and raises the household's real disposable income and national GDP.
- In the case of Suwon, the unemployment rate in Suwon increases in the short term but decreases in the long-term, and it i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such as dropping regional production (GRDP) and reducing the number of workers.
- Meanwhile, the unemployment rate is found to be affected most by GDP, suggesting that a policy that lowers the unemployment rate should not only be a superficial job policy, but also a substantial policy that can fundamentally increase national productivity.
-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simultaneously with labor and industrial policies that can support labor productivity improvement, corporate tax cuts, and lowering interest rate to increase productivity.

- Decision makers should consider each policy in various ways and implement the policy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effects that can be derived from it.
  
- The minimum wage is most likely to be caused by exogenous policy decisions.
  - This shows the importance of the process of minimum wage policy-making.
- In Korea, the minimum wage policy is determin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viewed by the Minimum Wage Committee, a social dialogue organization.
- This structure is helpful for fast policy making but also has vulnerability that does not address multiple issues at the same time.
- Therefore, it is needed to add a process to examine the impact of minimum wage change in detail such as making minimum wage decision regionally as in Japan and empowering the consultation and deliberation process by the local social dialogue and central social advisory bodies, or implementing the UK-like approach that includes the central advisory bodies in the current system and adding the parliamentary approval procedures, etc.
  - For example certain period letting them to absorb sudden shocks in areas and industries sensitive to minimum wage changes is necessary.
  - Differential implementation plan for each situation such as minimum wage reduction, establishment of minimum wage table by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corporate size, grant of grace period, etc.
  - It is necessary to analyze regional and industrial conditions b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workers by region and industry classification and the number of industries, before considering the minimum wage policy.

- In the United States, the minimum wage is adjusted the timing of reaching target wage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business and whether medical insurance is received, and in Europe, the minimum wage system, which is applied only to specific regions, is on the consideration to reflect regional differences.
- In the case of Suwon, the minimum wage change (raise) has the biggest impact on the change in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number of workers in Suwon.
- It means that Suwon is sensitive to changes in minimum wage compared to the whole country.
-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affecting the regional GRDP in Suwon is identified by the number of workers, which also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a major shock factor.
- In Suwon, the service industry-oriented busines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clear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whole country. Thus the central minimum wage policy is needed to reflect those issues: consideration of regional differences, minimum wage tables differentiating by business size, and establishment of regional advisory bodies, etc.
- At the Suwon city level,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change the industrial structure, which is overly focused on the service sector.
- In addition, it is need to consider the quality of the labor force in Suwon and to seek ways to diversify the types of local industries in the long term.
- As for the minimum wage, as mentioned in the national level, it is necessary to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wage decision committee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advisory group in Suwon, that can protect local industries and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 In addition, when the support for revitalization of local industry is combined to improve regional productivity, the impact of the regional economy due to minimum wage change is expected to be minimized.

Keyword : Minimum wage policy, SVAR analysis, Economic policy, Labour market policy,  
Local economy

| 저자 약력 |

양은순

경제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nell7508@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산업단지 발전 방안 연구」 (2019, 수원시정연구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분석을 위한 수원시 재정건전성 분석」 (2019,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교통체계 변화에 따른 원도심 상권영향 고찰: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2019,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적정 업체 수 산정」 (2019, 수원시정연구원)

「2019 주요 재정사업 평가」 (2019, 수원시정연구원)

「법인세 인상의 재정 및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동태적 분석」 (2017, 경제학연구)

「현재가치 승수로 측정된 정부지출 증가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2019, 국제경제연구)

「Macroeconomic shocks and stock market returns: the case of Korea」 (2018, Applied Economics)

한수민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